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國內學術會議 發表論文集

1992. 2. 27

民族統一研究院

目 次

| | | |
|---------------------------------------|-----|-----|
| I. 開會辭 | 李秉龍 | 1 |
| II. 第1會議：「基本合意書」의 法的 性格과 政治的 意義 | | 3 |
| 1. 主題發表 | 丁世鉉 | 5 |
| 2. 討 論 | | 25 |
| III. 第2會議：南北間의 不可侵과 信賴構築의 展望 | | 57 |
| 1. 主題發表 | 吳寬治 | 59 |
| 2. 討 論 | | 71 |
| IV. 第3會議：南北交流·協力の 展望과 課題 | | 103 |
| 1. 主題發表 | 具宗書 | 105 |
| 2. 討 論 | | 123 |
| 〈附錄〉會議 概要 | | 151 |

序 文

蘇聯 및 東歐諸國의 개혁·개방과 表裏를 이루면서 일기 시작한 脫冷戰化, 脫理念化 추세로 말미암아 國際秩序가 再編되는 과정에서 '90년대는 '이념과 제도를 초월한 화해·협력의 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남북한도 지난해 12월 「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을 채택·서명하고 금년 2월 19일을 기해 이를 發效시킴으로써 '南北和解·協力時代'를 열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統一環境과 與件의 변화에 즈음하여 本 民族統一研究院에서는 南北和解·協力時代에 있어서의 우리의 座標를 再點檢하고 앞으로의 課題를 導出하고자 금년 2월 27일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라는 주제로 國內學術會議를 개최한 바 있다.

이 報告書는 금번 國內學術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토론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일부 논문은 그후 저자가 토론내용을 감안하여 다시 손질하였으며, 토론내용도 책으로 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편집하였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앞으로의 남북관계 發展方向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參考資料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2. 3.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조정실

開 會 辭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라는 주제로 제3회 國內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발표자·사회자·토론자로 참여하여 주신 학자·전문가 여러분께 感謝의 人事를 드립니다. 또한 公私多忙하신 중에도 이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來賓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蘇聯 및 東歐諸國의 개혁·개방과 表裏를 이루면서 일기 시작한 脫冷戰化·脫理念化 추세로 말미암아 國際秩序가 再編되는 과정에서 '90년대는 '이념과 제도를 초월한 화해·협력의 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변화에 상응하여 남북한도 지난해 「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을 채택·서명하고 2월 19일을 기해 이를 發效시킴으로써 「南北和解·協力時代」를 열어나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은 앞으로 具體的 實踐過程을 통하여 남북한의 정치적 화해와 신뢰구축을 조성하고 평화공존체제 정착과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寄與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남북관계는 선전차원의 논쟁단계를 벗어나 실천의지를 확인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방법들을 협상을 통해 制度化하는 段階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文件들의 개념 및 적용범위의 해석, 이행의 전제조건, 우선순위, 이행절차 및 방법, 이행의 보장방안

등을 둘러싸고 남북간에 異見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남북화해·협력시대」의 到來가 반드시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憂慮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같이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관련하여 期待와 憂慮가 교차하는 현시점에서 「기본합의서」의 기본성격과 파급효과, 정치, 군사, 교류·협력 문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論議를 통하여 남북관계의 現況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進展方向을 모색해야 될 必要性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研究院은 이러한 必要性을 감안하여, 「남북합의서의 法的 性格과 政治的 意義」, 「남북간 불가침과 信賴構築의 展望」, 「남북교류·협력의 展望과 課題」라는 주제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남북화해·협력시대」로 연결되는 민족사의 途程에서 우리의 座標를 再點檢하고 當面課題를 導出하는 討論의 場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學術會議가 「南北和解·協力時代」를 열어 나가는데 있어서 有用한 정책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斯界의 專門家 여러분께서 高見을 자유롭고 진지하게 교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開會의 인사에 같음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1992. 2. 27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第1會議：「基本合意書」의 法的 性格과 政治的 意義

1. 主題發表 …………… 丁世鉉(民族統一研究院 副院長)

2. 討 論

- 司 會：金 惠(外國語大 教授)
- 討論者：柳世熙(漢陽大 教授)
全寅永(서울大 教授)
崔大權(서울大 教授)

빈 면

「基本合意書」의 法的 性格과 政治的 意義

丁 世 鉉

(民族統一研究院 副院長)

1. 序 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서명되고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基本合意書로 약칭)는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平和共存體制를 실질적으로 制度化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최초의 포괄적인 남북 정부당국간 합의서라는 점에서 기본합의서 발효는 반세기에 이르는 남북 분단사에 있어서 분수령을 이루는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합의서가 국민적 합의와 지지속에서 이행·실천되기 위해서는 기본합의서의 法的 性格과 政治的 意義가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 내부에서 기본합의서의 批准同意問題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그 政治的 意義를 규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기본합의서의 法的 性格과 國內法制에 미치는 影響을 분석하는 동시에, 기본합의서 채택·발효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 政治的 意義를 분석하고 향후 北韓의 豫想態度를 전망한 기초위에서 統一指向的 南北關係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 취해야 할 우리의 자세를 논의하고자 한다.

2. 基本合意書의 法的 性格

國際法上 條約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제법 주체간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書面合意를 말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라는 점에서 條約은 단순한 政治的 宣言이나 綱領 또는 紳士協定과 구별된다.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에는 國家 뿐만 아니라 국제조직, 교전단체, 분단국을 구성하는 정치실체 등 國家類似團體도 포함된다.

1969년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協約」(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은 조약을 “단일문서, 2 또는 2 이상의 문서로 되어 있는, 또한 그 특정 명칭이 어떠한 문서로 국가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國際協定”이라고 정의(제2조 1항)하고 있고, 동 협약이 국가간의 조약에만 적용된다고 규정(제1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러한 비엔나協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국제법상 條約이 국가간의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약법은 300여년 이상 동안 주로 서구 국가간의 국제관행에 기초한 慣習法으로 형성되어 왔는 바, 1969년 비엔나에서 열린 外交官會議에서 100여개국들이 그러한 조약을 규율하는 관습법으로서의 國際法—그것도 국가간의 조약에만 적용되는 관습법—을 우선 法典化(codify)하여 채택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비엔나協約上 조약의 정의는 당해 협약의 체결목적을 위해서 한정적으로 규정된 것임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1986년 「國家와 國際組織間 및 國際組織 상호간에 체결된 條約法에 관한 유엔協約」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條約을

“특정 명칭이 어떠한 관계없이 문서로 국가와 국제조직간 및 국제조직 상호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협정”(제2조 1항)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도 국가와 국제조직이라는 2개의 국제법 주체만을 조약체결 주체로 명기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만이 국제법 주체가 아님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교전단체, 분단국을 구성하는 정치실체, 민족해방운동단체 등 國家類似團體도 역시 條約締結能力을 갖는 國際法 主體임이 널리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조약의 범위에는 국가와 국제조직을 포함하여 조약체결능력을 가진 국제법 주체간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書面合意가 모두 포함되는 바, 이러한 의미에서의 조약을 廣義의 條約¹⁾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狹義의 條約이라 함은 예컨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처럼 광의의 조약중 「조약」(treaty)이라는 명칭을 특별히 사용한 국제법 주체간 서면합의만을 말한다.

이번에 체결된 南北 基本合意書는 國際法上 상호 승인한 國家間 條約은 아니나 분단국을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정치실체간에 체결된 當局間 合意書이다. 특히 기본합의서는 序文, 條文配列, 정부대표의 署名, 發效節次, 명확한 法的 權利·義務의 구체적 규정 등 國際法上 條約의 形式과 內容을 갖

1) 廣義의 條約에는 조약(treaty) 뿐만 아니라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규약(covenant), 헌장(charter), 규정(statute), 결정서(act), 의정서(protocol), 합의의사록(agreed minute), 선언(decларation), 교환공문(exchange of notes), 잠정협정(modus vivendi)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국제법 주체간의 書面合意가 모두 포함된다.

추고 있으며, 締結節次에 있어서도 국가간 조약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으므로 본질적으로 法的 拘束力을 갖는 合意文書이며 7·4 남북공동성명과 같이 단순한 政治的 宣言이나 綱領은 아닌 것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은 政府代表間에 공식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정치인이 「상부의 뜻을 받들어」 비공개리에 합의한 문서였다. 비록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條約締結 意思의 缺如, 내용 및 형식상에 있어서 條約으로서의 要件 未備 등으로 어디까지나 宣言的 性格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본합의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내용과 형식 및 절차면에서 국제법상 조약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廣義의 條約이라는 점에서 7·4 남북공동성명과는 法的 性格이 다르다.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하고,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에 관하여 향후 남북한이 실천해야 할 사항을 法的 權利·義務의 形態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는 내용상 통일이전의 남북관계를 暫定的 特殊關係로 규정하고,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기간중 南北間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 義務를 규정한 「暫定協定」(*modus vivendi*)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합의가 국제법상 조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발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진정한 意思 合致가 필요하다. 이러한 意思 合致의 要件으로는 ①條約當事者が 條約締結能力(capacity)을 가질 것, ②條約當事者에 있어서 條約締結權者가 조약을 체결할 것, ③條約締結權者가 조약체결을 위하여 임명한 代表者(전권대표)간에 하자없는 합의(consent)가 성립할 것, ④條約의 內容이 실천 가능하고 적법한 것을 객체(object)로 할 것, ⑤일정한 條約成立(체결) 節次를 완료할 것 등을 들 수 있다.²⁾

남북 기본합의서의 경우, ①②③④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첫째, 남북한은 분단국을 구성하는 두 정치실체이기는 하나 각기 유엔회원국으로서 100여개를 상회하는 국가들과 修交하고 있고, 국제법상 법률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은 條約締結能力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조약당사자에 있어서 남북한을 대표하는 조약체결권자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기본합의서는 한국헌법상 조약체결권자인 盧泰愚 대통령과 북한헌법상 조약체결권자인 金日成 주석간에 最終 裁可節次를 밟아 체결·발효되었으며,³⁾ 다만 그 全權이 鄭元植 총리와 延亨默 총리에게 위임되어 이들이 기본합의서에 서명한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7·4 남북공동성명과는 달리 정부대표인 남북한 총리가 적법한 代表性和 全權을 가지고 합의서에 서명

2) L.Oppenheim, *International Law*, 8th ed., Vol.I(London : Longmans, 1955), pp. 882~893 참조.

3) 헌법 제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 헌법 제96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와의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했던 것이다.

셋째, 기본합의서는 조약체결권자 또는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진 대표자간에 하자없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가운데 체결되었다. 즉 기본합의서는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공개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사기·강박 등 조약체결상의 하자없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넷째, 조약의 내용 자체가 실천 가능하고 적법한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바, 기본합의서의 내용은 쌍방이 준수의사를 가지고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것이다.

다만 ⑤의 일정한 조약성립절차의 완료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합의서 제25조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發效를 위한 內部節次와 관련하여 헌법 제60조에서 규정한 國會의 批准同意를 거쳐야 하는가가 논란이 되어 왔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3조 및 정부조직법 제30조 1항에 따라 외무부장관이 조약체결권자인 대통령의 통할하에 국가간 조약체결 사무를 전담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憲法慣行에 의하면 國會의 批准同意는 國家間 條約에 대해서만 행하여져 왔다. 그러나 이번 기본합의서의 경우, 대통령의 전권위임을 받은 총리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에 서명하였으며,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한 서문의 규정에 비추어 성질상 「국가간」

조약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합의서 자체가 통상적인 國家間 條約 締結節次를 밟을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간 조약의 비준과정에서 요구되는 國會의 批准同意는 필요하지 않다.

기본합의서가 국제법상 상호 승인한 국가간 조약은 아니지만, 내용상 國家安全保障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게 될 문서임을 고려하여 統一政策에 대한 國民的 合意導出 次元에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기본합의서가 국가간 조약 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國會 批准同意를 거칠 경우,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남북간의 교역과 각종 교류·협력이 국가간 무역이나 협력사업으로 간주되어 關稅가 부과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기본합의서 제15조의 民族內部交流 規定과 관련하여 GATT와 법리상 해석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민족내부 특수관계를 규정한 기본합의서 서문의 정신과도 상치된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우리측이 「두개의 조선」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여 왔는바, 국가간 조약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북한의 새로운 對南 비방명분을 제공해 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본합의서 이외에도 향후 수많은 합의서가 채택될 것인 바, 매번 국회동의를 받을 경우 절차상 번거로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회의 비준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요컨대 남북 기본합의서는 헌법 제60조 1항에서 규정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기본합의서가 분단 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최초로 남북 정부당국간에 체결된 합의서이며 향후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政治的 重要性和 時代史的 意味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번 합의서 채택을 포함한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國民的 合意와 支持를 확인하는 節次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합의서 채택·서명 당시 국내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이를 경하하며 지지를 보냈던 사실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13대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지난 1~2월중 열리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새로이 구성될 14대 국회에서 事後 支持決議形式을 취하는 것도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재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國內法制에 미칠 影響

기본합의서가 발효되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남북한은 상호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하고, 파괴·전복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또한 남북한은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相互 不可侵義務 및 불가침 경계선 존중의무, 軍事的 信賴 構築을 위한 성실한 협의 의무를 지며, 남북간에 각종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진다. 만일 一方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他方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러한 義務 不履行을 즉각 중지하거나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이 합의서상의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되는 바, 이러한 각자의 의무에 대응하여 당연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義務履行을 요구할 수 있는 權利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기본합의서가 南北間에 效力을 발생

하는 것이지 1992년 2월 19일자로 남한과 북한의 각기 내부적으로도 곧바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기본합의서가 발효와 동시에 남북한내에서 즉각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남북한이 각기 기본합의서의 國內的 實施 내지 執行義務를 지게된다는 것이다. 물론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은 각기 국내적 실시를 위한 의무 이행차원에서 시행을 위한 國內節次的 完了 및 필요한 國內法令의 改廢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 실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남북한은 먼저 각각의 헌법 및 법률에 의거하여 각기 施行에 필요한 節次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라 조약 및 국내법령을 국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法令 등 公布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기본합의서가 국내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憲法 제6조 1항 및 「法令 등 公布에 관한 法律」 제6조 및 제11조⁴⁾에 의거하여 국내적으로 公布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국내적 절차를 거치게 될 때 비로소 기본합의서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간 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批准을 거친

4)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條約公布文의 前文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大統領印을 押捺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副署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는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條約은 法律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署名만으로 발효하는 조약은 命令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通說이며 실제의 慣行도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본합의서는 국가간 조약이 아니며 또한 국가간 조약체결과과정에서 요구되는 批准節次를 거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회의 의결, 총리의 국회 본회의 보고, 통일원장관의 국회 관련위원회 報告 및 대통령의 裁可(서명을 통한 확인행위) 등의 절차를 밟았다. 즉 署名만으로 발효한 것이 아니고 大統領의 裁可節次—이는 국가간 조약의 경우 批准에 상당하는 행위이다—를 거친 것이므로 당연히 기본합의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져야 한다. 한편 기본합의서가 공포되어 국내적으로 시행되고 法律과 같은 效力을 가지게 되면, 기존의 남북관계 법령과 기본합의서 간에는 後法優先의 原則이 적용됨으로써 양자간에 모순·충돌이 생길 경우 후자가 우선되는 바, 기본합의서의 이와 같은 국내법제에 대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관련 國內法令의 改廢問題가 제기될 수 있다.

남북한은 기본합의서 서문에서 남북관계를 民族內部 特殊關係라고 천명한 동시에 제1조에서 상호 상대방의 體制를 인정·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명란에서는 남북한의 正式 國號를 사용하고 있다. 상호 체제인정·존중을 약속했다는 것이 상호 국제법상 국가승인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완전한 「국가」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남북한이 특수한 의미에서나마 각기 상대방의 「國家性」 또는 「國家的 實體性」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북 관련법령중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國家保安法은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反國家團體를 규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북한을 대표적인 반국가단체로 지목하여 북한과 관련된 반국가적 활동을 처벌하여 왔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기본합의서와 모순 충돌되기 때문에 즉각 개폐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과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범위에 북한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북한과 직·간접 관련이 있는 반국가 활동을 엄단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는 체제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나 집단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의 고유한 內部問題로서 다른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즉 反國家團體—그것이 북한이건 아니건—를 규율하는 基本法은 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이나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 필요한 것이다. 논리상 반국가단체는 우리사회 내부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로서는 기본합의서 채택을 계기로 상호 체제를 인정·존중할 것을 약속한 합의서 정신에 따라 事案別로 반국가단체의 범주에 북한을 가능한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국가보안법을 탄력적·신축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본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협력 행위를 정당한 경우로 인정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면 법적용상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⁵⁾ 요컨대 앞으로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부합되도록 國家保安法을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개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5)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여유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조선혁명노선을 포기하고 형법상의 반국가범죄 조항을 개폐한다면 우리도 相互主義와 善隣友好的의 精神에 입각하여 국가보안법을 점진적으로 개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기본합의서의 향후 실천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어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남북관계 진전정도에 따른 시기선택의 문제로 귀착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본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북한의 「국가성」을 명백히 부인하는 관련 法令은 신속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괴뢰정권」이나 「북한 괴뢰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법령들을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기본합의서는 각종 인적·물적 교류·협력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 합의서 규정과 같이 남북간 교류·협력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관련 국내법령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국내법령 등을 남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인적 왕래와 각종 물적 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4. 基本合意書의 政治的 意義

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의 반목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을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은 물론 통일과 관련하여 커다란 意義를 지니고 있다.

첫째, 기본합의서는 統一을 결과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전제하

고, 南北 關係改善과 平和共存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무엇보다도 큰 의의가 있다. 北韓이 결과로서의 통일을 명분으로 하여 공세를 취해 온 데 반해 韓國은 그동안 통일정책의 일차적 목표를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기본틀 구축에 두고,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즉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서 민족적 이질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남북이 상호 불신·반목하여 온 현 상황에서 自由와 人權 그리고 幸福이 보장되는 단일 민족국가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平和共存의 中間過程을 통하여 민족화해와 신뢰를 점진적으로 증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하에 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이번에 발효된 기본합의서 서문에서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하였는 바, 이는 남북한이 당장 통일을 이룩할 수 없는 현실의 토대위에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군사적으로 침범하거나 상대방을 파괴·전복하지 않으며, 교류·협력을 통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한 것으로서 統一過程과 接近方法面에서 남북 쌍방이 합의하고 그 約束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기본합의서의 채택과정에서 北韓의 統一概念 보다는 韓國의 統一概念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기본합의서의 발효를 통하여 남북한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밝히고 있는 統一國家에 이르는 過渡體制로서 「남북연합」을 이룩하기 위한 準備段階인 「화해·협력」단계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⁶⁾

둘째, 기본합의서는 제3자의 개입·중재·조정없이 南北 當局間의 공식적 협의와 합의를 거쳐 채택·발효된 최초의 公式的 合意 文書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기본합의서는 민족의 의사와 달리 타의에 의해 강요된 분단사를 우리 민족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청산해 나간다는 민족 주체적 노력의 결실로서 높이 평가될 수 있으며, 또한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 쌍방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책임있는 當局間 會談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화해·협력시대」 개막을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본합의서는 그 형식과 절차, 내용면에서 지난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과는 달리 남북한의 正式 國號와 署名者의 職銜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이로써 남북한은 상호 실체를 인정하는 동시에 민족화해를 공식 천명함으로써 종래의 비정상적인 상호관계에서 탈피하여 正常的인 關係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기본합의서는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천명한 것으로서 「한반도문제의 한국화」 정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낼 것이며, 남북한이 변화하고 있는 주변환경을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통일에 장애가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셋째, 기본합의서가 발효된 후 성실하게 실천에 옮겨진다면 「남

6) 기본합의서 채택·발효를 통하여 南北關係는 「대결적 공존」 단계에서 「경쟁적 공존」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준수를 통해 南北 平和協定을 체결하는 등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남북연합」 단계인 「화해적 공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조선해방」논리에 입각한 북한의 기존 대남전략이 수정되고, 우리의 통일정책기조에 입각한 통일과정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소련·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변혁과 세계적 차원에서의 화해·협력추세 및 동북아 국제환경의 변화과정에서 북한이 직면한 對內外政策上의 戰術的 變化必要性에 따라 북한이 기본합의서 채택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⁷⁾ 기본합의서 서문과 화해부문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상호 체제 인정·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금지 및 파괴·전복행위 중지가 성실히 이행된다면, 북한은 기존의 대남혁명노선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강조됨으로써 政治·軍事問題 解決 優先論을 고집하여 온 북한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교류·협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北韓社會의 開放과 變化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한편 기본합의서에 南北當事者 解決原則이 명시되고,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 기반위에서의 통일 실현이 강조되었으므로 段階的 統一過程과 漸進的 接近方法을 주장하여 온 우리측의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합의서 발효만으로 남북화해·협력시대가 즉각 개막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본합의서 채택·발효를 남북화해·협력시대 개막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쌍방이 합의서의 내

7) 북한이 기본합의서 채택에 응한 직접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體制維持次元에서 체제 인정·존중을 약속함으로써 김정일후계체제를 보호·유지한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國際的 孤立을 탈피하고, 核査察 壓力을 회피하는 동시에 經濟難 打開을 위해 對美·日 接近을 시도한다.

용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 여부는 남북한이 기본합의서 각조항에 규정된 내용을 여하히 이행·준수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5. 向後 北韓의 豫想態度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기존의 對南戰略을 포기하지 않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기본합의서 이행·준수와 관련하여 남북간의 이견과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예컨대 기본합의서 제5조와 관련하여 「평화상태로의 전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⁸⁾ 또한 제12조의 불가침 이행보장과 관련하여 軍事的 信賴構築과 軍備縮小 並行推進을 주장하는 우리측의 입장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목적으로 한 先軍縮을 주장하는 북한측의 입장이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교류·협력부문에서도 북한측은 정치·군사문제 우선 해결을 주장하면서 교류의 대상과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체제위협요인으로 될 수 있는 출판·보도, 이산가족문제를 포함한 인적 교류 등 직접교류를 가능한 한 회피하려 할 것이다.

특히 북한측은 합의서 발효 이후 「민족대단결」을 표방하면서 聯

8) 김일성은 1992년도 신년사에서 기본합의서 이행과 관련, 有關國의 協調 필요성을 언급하였는 바, 「평양방송」(1992.2.9)은 이를 駐韓美軍 철수, 對美平和協定 체결로 해석하였다. 향후 북한은 기본합의서 전문의 조국평화통일 3대원칙 가운데 「자주」원칙에 근거하여 이러한 주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9) 「평양방송」, 1991.12.27.

共統一을 목표로 하여 「범민련」, 「범청학련」 등을 중심으로 統一戰線戰術을 적극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김일성은 1990년 5월 24일 「전민족적 통일전선」 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1991년 8월 1일 「민족대단결」에 토대한 통일전선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1992년도 신년사에서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의 근본담보」로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측은 기본합의서 채택을 「대결노선에 대한 민족대단결 노선의 승리」로 강조하면서 1991년에 있었던 2차례의 「범민족대회」 개최와 「범민련」 결성, 범민족통일음악회, 통일축구경기 개최, 단일팀 결성 등을 「민족대단결」 노선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¹⁰⁾ 또한 북한측은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인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를 통해 각계 인사, 동포들의 자유왕래 접촉을 「온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거족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¹⁰⁾ 이와 함께 북한측은 統一方途의 확정을 위한 「정치협상회의」 소집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¹¹⁾ 동시에 북한측은 民族的和解와 團合 합의를 근거로 교류·협력을 가로막는 「분단장벽」 철폐, 자유왕래·전면개방 실현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한국의 國家保安法 철폐 및 訪北人士 석방, 남한내의 자유로운 통일논의 보장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¹²⁾ 향후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북한은 국제적 고립탈피와 體制固守의 일환으로 남

1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1991.12.24)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1991.12.25.

11) 「로동신문」, 1991.12.31.

12) 김일성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1991.5.24) ;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로동신문」, 1991.12.25.) 참조.

북대화의 지속, 제한적인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再調整을 모색하면서도, 한국의 양대선거에 따른 정치상황을 이용하여 대남 평화공세 및 통일전선전술 강화 등 기존의 二重的인 對南戰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이 二重的인 對南戰略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합의서에 규정된 조항들을 실천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도 대미·일 접근, 유엔가입, 대외개방 모색 등 對外分野에서의 유연노선을 걷고 있는 동시에, 經濟分野에서도 각 기업의 자율성 확대 및 개인부업 허용, 능력별 임금제 실시 등 物質的 動機 誘發方式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 社會分野에서는 종교활동 활성화, 민속절 제정 등 부분적인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물론 김일성·김정일 世襲體制를 근간으로 한 權力構造와 主體思想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공고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북한의 본질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¹³⁾ 북한이 經濟難 해소를 위해서는 부득이 體制維持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통제된 개방」을 추진하면서, 경공업 발전 등 주민불만 해소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난 해소를 위해 對美·日 接近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합의서 채택·발효를 계기로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합의서에 규정된 諸條項

13) 김정일은 1991.12.24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으며, 북한의 체제고수 노력은 金正日의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5.5)와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1992.1.3)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남북한 共存共榮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우리 社會內部的 統一對備力量을 먼저 키우고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結 語

기본합의서는 南北 當局間에 체결된 合意書로서 통일 이전의 남북관계를 暫定的 特殊關係로 규정한 「잠정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이 각기 獨自性和 國際法的 主體性を 보유하는 것과는 별도로 대내적으로는 남북관계를 「1민족 상호국가성 인정 2체제 2정부」의 民族內部 特殊關係로 규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체제를 제도화하자는 것을 합의한 文書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은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통일국가에 이르는 과도체제로서 「남북연합」을 이룩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며, 통일을 향한 長征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統一이 目前에 다가온 것처럼 성급한 기대를 갖기 보다는 統一을 실현하기 위한 土臺와 基盤을 마련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빈 면

第1會議 討論

김 덕 교수(사회) :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이나 정치적 의의에 관해서 발표자께서 몇 조목으로 분류해서 비교적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회자로서 반복하여 요약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지명토론자의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양대 유세희교수님의 지명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유세희 교수(지명토론) :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발표자께서 지적하였듯이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민족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는 이 합의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과 우리가 협의해야 할 상대방이 신뢰를 통하여 협력하고 실천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상대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기본합의서의 성격에 관해서 국내에서 많은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기본합의서를 실천하는 과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합의서의 채택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고, 특히 합의서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을 때에는 비판적 여론이 점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冒頭에서 합의서가 굉장히 의의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7·4공동성명과 이번 합의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다가는 이번 합의서가 7·4공동성명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여러가지 비관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제일 큰 비판론은 과거 7·4공동성명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남북관계의 환경이 냉전체제의 청산이라든지,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라든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라든지, 또 북한이 국내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북한이 스스로 체제개선을 해 나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상으로도 남한이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유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는 비판여론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를 서두른 이유가 국내정치와의 연계선상에서 정부와 여당이 남북관계를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비판받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기본합의서와 핵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라는 비판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핵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계속 미온적이거나 국제사회에서 의구심을 갖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이러한 비판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수이긴 하지만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 핵재처리 시설을 포기한 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하는 비판이 있는데, 우리까지 핵재처리 시설을 포기한 것은 손실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원래부터 이러한 상황에서 핵을 개발하거나 적어도 개발하는 척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과거 NCND정책으로 남한내 핵의 존재여부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써왔지만 요즘 북한이 하는 처사는 소위 수정된 북한판 NCND정책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은 절대 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핵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문제는 북한 자체에 대한 공신력으로 인해 북한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가 이러한 의심을 하는 한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카드는 마치 동네 말썽장이가 계속 말썽을 일으켜서 그것을 토대로 흥정을 하는 것과 비유할 수 있는데 핵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 즉 개방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인데 여기에서 김일성체제는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보다는 우선 김일성체제의 유지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쉽사리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체제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우리체제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과 북한이 우리체제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으로 다른 시각, 체제의 상이함에서 오는 차이,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적대관계 등으로 인해 앞으로 화해와 협력을 향한 우리의 실천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제의 상이함에서 오는 문제점중 실천과정에서 쉽사리 범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상호비방 중지문제인데, 남북간에 실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체제의 성격상 북한에 대한 비판을 정부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는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학계, 언론계, 종교계가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하나 남한은 체제의 성격상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를 통한 방법이든 여타 방법에 의해서든 남한에서는 정권의 교체, 체제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민주화가 가속화될 경우 이러한 체제의 변화,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정권에 있어서 정책의 지속성같은 것을 보장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도 우리가 대북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과장하지도 말고 그대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담당하고 조용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몇몇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북한 스스로 우리체제나 능력 그리고 국제사회 및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북한에 맡길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소위 대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보다 더 실질적으로 건설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 남북합의서의 실천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문제들을 남북한간의 체제차이와 연관시켜서 아주 중요한 논의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의 전인영 교수님께서 토론하여 주

시겠습니다.

전인영 교수(지명토론) : 정박사께서 세가지 포인트로 발표하신 논문은 요점이 잘 전개되어 있어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박사의 발표논문을 읽으면서 합의서를 국제법상 조약으로 생각해서 비준동의를 거칠만한 충분한 근거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합의서가 비준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쓰고 있고 상당한 근거도 제시하였지만 이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의의나 국가보안법 등 우리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의의가 없고 우리의 시대정신이라든지 합의서 정신에 맞게 계속 조정이 되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 논의를 대신하겠습니다.

헨더슨교수가 쓴 책에 보면 우리 한민족이 분단된 것은 놀라운 사실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헨더슨교수는 668년부터 1945년까지 한민족공동체로 유지되어 온 이 나라가 어떻게 분단될 수 있는냐고 말하면서 분단을 유발시킨 열국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기본합의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유세희교수와 잠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기본합의서에 대한 국내적 절차를 밟으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와 중앙인민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김일성주석이 비준을 했다는 것은 지난번 TV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 이야기는 의회와 정부가 합동

으로 합의서를 승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절차를 밟았는데 우리는 정박사가 발표한대로 국회에 대한 보고, 대통령의 재가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고 어떤 것은 행정부의 협정(agreement) 식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 우리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하나의 관건이 되고 또 하나는 국가의 성격에 관해서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성격에 대하여 말하자면 북한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가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국가(Central State)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고인민회의나 중앙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국가형태입니다. 또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1개인이 모든 과정에 관여하면서 모든 것을 지시하고 파악하고 있으며 개인이든 부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승인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형태라든지 우리의 체제로 보아서 다원주의적인 우리사회에서 오히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법학자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균형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부에서는 신속성, 비밀성, 능률성 등을 중시하여 국회를 거치지 않고 서명·발효하는 과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는 정오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밟느냐 밟지 않

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의 특성이나 국가의 형태 등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통령이 서명하고 상원으로 보내서 비준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52년 4월 베이커스 상원의원이 조약이 국내법과 배치될 때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가 2/3선에서 한두표가 모자라 부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약이 국내법과 저촉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국가보안법 등 다양한 법이 검토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점이 대두될 수 있는데, 이번 합의서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논의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약 또는 협정 등 영어로는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박사도 누누히 이야기하였고 국민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동의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합의서가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보다 확실해지고 앞으로의 남북한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민족내부간의 관계로 해결하려고 할 때 GATT와의 저촉을 우려하고 있는데 신동아誌에서 김세원교수가 제25조의 예외사항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2/3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헌장 제1조의 목적과 원칙을 보

게되면 평화유지, 협력, 인도주의적인 면 등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데 합의서가 그러한 정신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합의서는 충분히 국회의 동의를 받는 중요한 사항이 되고 내부적인 교역이 반드시 국제사회의 제약을 받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서독의 경우를 보듯이 해결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로도 120여개국이 북한을 승인했고 우리도 160여개국이 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자간의 관계로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 유세희교수께서는 기본합의서의 정치적 의의와 관련된 토론을 해 주셨는데 전인영교수께서는 주로 법적 성격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토론자이신 서울대학의 최대권교수께서 이야기할 실마리를 미리 이야기해 준 셈이 되었습니다. 사실 법적 성격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꽤 관심이 큰 문제인데 최대권교수께서 그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권 교수(지명토론) : 이미 많은 쟁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는 쟁점을 몇가지만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의의에 대해서는 북한이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무너질 것인데 우리가 살려주는 것은 아닌가, 김정일체제로 넘어가는데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하신 분

이 제시므로 유보를 하고 저는 비교적 법적인 문제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헌법에 영토조항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대원칙으로 헌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남북합의서를 맺기 이전이나 유엔동시가입하기 이전에도 120~30여개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도 100여개 가까운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 수교국도 100여개에 달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국내적으로 남북이 북쪽에서는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남한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단적인 표현이 이 영토조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법적인 면과 국제법적인 면이 항상 이중구조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유엔동시가입에 의하여 바뀌었느냐 하는 문제도 논의되어야 하고 그 문제와 결부되어서 이번 합의서에 의해서 그 상황이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국제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다분히 국내법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가 그 회원국이라는 것이 유엔헌장에도 분명히 쓰여 있듯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지만 이것은 유엔에 동시가입함으로써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서 승인한 것이냐 하는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관행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과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국가로 승인한 흔적을

남겼느냐,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오히려 귀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영토조항이 있고 그밖에 여러가지 정부의 성명 등을 통해서 볼 때 유엔동시가입에 의해서 국가로까지 승인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합의서가 조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발표자께서 성립요건 등 여러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반드시 국가간의 합의만이 조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전시중 일선지휘관간끼리 국지적인 부분에서 휴전을 합의하고 부상자들을 교환한다는 합의도 충분히 국제법적인 조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비준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약이 국가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국제적인 주체이면 가능하며 그리고 모든 조약 심지어 국가간의 조약도 모두 비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의 헌법에는 조약은 상원의 동의를 얻게되어 있는데, 상원의 동의없이 본조약보다 더 많은 수의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분히 국내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합의서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특히 북한을 국가로 생각했느냐 하는 점과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조약이든 당사자간의 계약이든 당사자가 그 합의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한 것, 또는 의도하려고 한 것 이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서 어디를 보아도 국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하여 굳이 국가와 국가사이가 아닌 나라와 나라사이라고 하였습니다. 서명은 국무총리가 했습니다만 이러한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성 문제를 피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발표자께서도 처음에는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이런 공식으로 했던 것을 수정해서 상호국가성이라고 했는데 국가성에 관해서는 가장 잘 보아야 모호하게 얼버무리고 넘어간 것이고 우리의 의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합의서와 관련하여 국가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잘 보아주어서 국가성을 얼버무리고 넘어 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합의서가 국가간의 조약이 아니다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비준을 요하느냐 하는 것은 국내법적인 문제인데 정부의 행위라는 것은 개인의 행위와 다르다는 점에서 국가가 한 행위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국가 승인 여부를 판가름하는 큰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비준절차를 다 받고 조약으로 취급해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행위를 다했다고 할 때에는 비준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준의 문제는 그러한 시각에서 보아야 하고 저로서는 그러한 시각에서 합의서가 비준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영토조항이 있는 상황하에서 국제법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에 관한 한 헌법이 조약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위

배되는 조약이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의 의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이러니까 당신네와 맺은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만 국내적으로 적어도 이 영토조항에 어그러진 행위를 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반드시 비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갖는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국회의 국민대표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것을 다루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오히려 국내법적인 차원보다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국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넘어가야 한다는 데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7·4남북공동성명도 일종의 넓은 의미의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조약이라는 것이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의 하위기관에 속하는 당사자끼리 맺는 것도 있습니다. 근래에 저는 경제분야에 관여하고 있는 분이 자신이 경험한 우려될만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에서 오는 대부분의 실무협상 대표들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들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협상을 하는데 한국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메모하고 타이핑한 후 사인하라고 요구하여 모르고 사인했더니 나중에 사인한 것을 근거로 사인한대로 하자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합의인데 사인을 해 준 것이 실수입니다. 그래서 조약으로 성립되느냐 아니냐하는 판단자체가 국제거래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

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과거 국가보안법이 대단히 막연하게 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법 원칙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막연하게 법률을 제정한다면, 형법 특히 국가보안법과 같은 중대한 법은 임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정부가 야당인사를 탄압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국가보안법의 功過를 논한다면 과거 치안이 아주 나빴던 6·25이후 남한을 이 정도로 유지하는데 기여한 점도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남용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맞게 이것을 어떻게 엄격하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기술상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형법 제정시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다만 그러한 전제가 관철이 되는 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전복하려고 한다든지 우리가 신봉하고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다시 말해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다원주의적인 질서를 파괴하려고 기도하는데 대해서는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질서를 파괴하려고, 김일성이 말하는 일당지배체제를 세우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체제를 세우겠다는 운동이 있다면 방어의 벽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합법적인 정부, 우리가 신봉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적어도 법적으로 방어벽을 쌓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신의 체제나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무방비로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의 경우 기술적으로 형법에 내란죄와 외환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란죄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것을 다스리는 법조항이고 외환죄라고 하는 것은 한국사람이 외국사람과 손잡고 우리나라를 침략케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을 다스리는 법조항입니다.

이 조항과 중복되는 국가보안법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 하는 것 또한 어디까지나 국내법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법체계를 단일화해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형법에 내란죄와 외환죄가 있으니까 단일화해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법에 포함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독립된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만 국가보안법, 형법조항은 가능한 한 엄격하고 분명하게 남용의 여지가 없게 제정되어야 하고 남용의 여지가 없게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인데 그 동안에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용의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민주화이래 1990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문제가 한번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기된 것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동조의 문제였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전반부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막연하게 제정해 놓으니까 남용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위헌이라고 할 듯 하다가 후반부에 와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즉 헌법의 원칙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성립된 정부를 전복하려고 한다든지 우리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침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찬양, 고무, 동조에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위헌이지만 거기에 한정해서 해석한다면 합헌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 운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한정해서 적용하도록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검사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자신들은 사실상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기소를 해 왔으며 북한사람과 체육교류나 문화교류를 위해서 만난다고 해서 이것을 찬양, 고무, 동조라고 하여 처벌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형법분야에서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은 대원칙적인 법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축적인 법의 운영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해 주셔야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판례가 나온 뒤로 작년에 국가보안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조문이 상당히 엄격해 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조만 예를 든다면 조문의 앞부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등 이런 것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엄격해 졌습니다.

첫째는 해석상으로 둘째는 법조문상으로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는 남습니다만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둘러싼 문제는 저는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 조항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표현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북에 주소를 둔 단체라고 하여 무조건 다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성립된 정부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나 단체라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북한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나라라도 이러한 반국가단체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 동안에 자기의 대남전략정책이라든지 남반부 해방 정책 같은 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무력도발 등 여러가지 행위를 해 온 행태에 비추어 보아서 반국가단체로 지목될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이지, 북한에 주소를 두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보아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37조 2항은 모든 법의 제정이나 해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조항인데 그 조항에 비추어 보아, 가령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려고 한다든지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방어를 하는 것은 헌법상으로 충분히 정당화되기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상으로 정당화되는 한 국가보안법상 이북에 주소를 두었기 때문에 주민까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체육이나 문화교류 등 교류때문에 만나는 것도 반국가단체와 만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문제가 어느 정도 엄격하게 되었는데 이것

도 그러한 원칙에 비추어 보아서 북한에 주소지를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합법정부 또는 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기도하려고 하는 단체가 반국가단체이고 그의 구성원이라든지 그것의 지령을 받은 자에 동조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할 때에 비로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에 주소지를 두었다고 반국가단체라고 정의한다면 헌법체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에서 우리의 남북교류·협력법과 같은 것은 존립근거를 잃게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유엔헌장 102조에는 유엔회원국은 맺은 조약을 유엔사무국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유엔에 인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보장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도 합의서를 유엔사무국에 등록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문제점만 제기하고자 합니다. 합의서의 이행에 관심이 많습시다만 만약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강제의 문제나 국제보장의 문제도 이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남북합의서가 맺어짐으로써 창구일원화라는 말로 문제가 정리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북합의서가 맺어짐으로써 모두가 북한사람을 만나고자 한다든가 각종 교류를 하겠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 회 : 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에 관련된 쟁점이 중요한 문제

이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최고수님께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토론에서 좋은 참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간 매듭을 위해서 발표자께서 가능하면 5분이내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세현 부원장 : 대체로 세분 토론자께서 특별하게 다른 관점이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전인영 교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관련하여 보충설명 형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기본합의서를 일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와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식으로 자기네 내부절차를 끝냈다고 말하셨습니다만 북한의 헌법조항에는 중앙인민위원회나 최고인민회의 또는 그 상설회의에 조약 등 외국과의 체결협정 등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은 비준문제와 관련해서 최고인민회의나 중앙인민위원회에 일체 동의권한이 인정되지 않고 오직 주석이 비준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주석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쪽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전인영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본합의서가 상위개념이고 비핵화공동선언은 그것보다는 하위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비핵화 공동선언이 내용상으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형식상으로는 하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2월 18일날 9기 18차 최고인민회의 상

설회의를 열어 가지고 다음번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심의해야 하겠다고 넘기는 것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 문제로 인해 한국사회내부에서 국회동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바로 그점을 겨냥해서 취하고 있는 일종의 남한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 하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론 최고인민회의에 국가의 안위를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외국과 체결하는 특히 핵안전협정과 같이 국제조직과 체결한 일종의 조약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최고인민회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정하는 것은 첫째,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고 둘째, 남한내부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국회비준동의를 둘러싸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의식해서 그쪽을 때리기 위한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지적되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비준동의문제와 관련하여 북쪽이 비준동의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상호주의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비준동의를 거칠 경우 헌법의 영토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최대권 교수님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만 우리가 비준동의를 밟을 경우에 북한이 다시 남한이 분단고착화를 획책하고 있다고 하는 대남비방을 할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문제와 연결되는 견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비준동의까지 받게 된다면, 소위 북한을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기본합의서의 서문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경우 영토조항의 개폐문제가 대두되고 여러가지 국내법령 개폐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놓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동서독의 기본조약과 비교해서 흔히 국내에서 비준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중에 우리 기본합의서가 1972년 12월 21일 체결된 동서독간의 기본조약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동서독은 비준절차를 밟았는데 왜 우리는 밟지 않느냐 하는 점을 논거로 삼는 분들이 있는데, 동서독간에 체결된 조약에는 분명히 영토, 주권, 내지는 국경 등의 용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동독의 요구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대로 동독은 서독에 대해서 자신을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국가로 인정해서 따로 살자는 주장을 해 왔었고,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쌍방은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것을 약속했고 그것이 조문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독의 경우 영토, 주권, 국경 등의 용어를 기본조약조문에 명문화하여 서로 비준동의를 받도록 약속했다는 점에서 비교하여 볼 때 동서독 기본조약과 우리의 합의서는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동독의 경우 두개의 국가로 분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준동의절차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독의 경우는 국회에서 간신히 통과되었습니다. 서독의 경우는 국가로서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안 된다는 입장에서 그것을 조약으로 비준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나

가는데 있어서 비준동의절차를 밟아 가지고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이 유리하겠는가 또 민족사적으로도 그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 회 : 답변의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고 특히 법적 성격에 관련된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실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지금 발표되고 토론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몇 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 시간은 2분내로 한정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련 교수(통일연수원) : 정박사의 논문중에서 기본합의서의 정치적 의의 첫번째 부분과 관련하여 통일을 결과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서, 통일을 과정으로 보느냐 결과로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통일을 결과로 보느냐 과정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통일자체는 당연히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결과나 과정이냐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의서니 남북연합이니 정상회담이니하는 것은 모두 다 통일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다만 통일을 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과연 통일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으로 될 수 있고 또한 통일이 목적이냐 수단이냐 하는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마치 합의서의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법적인 문제는 문외한입니다만, 우리 헌법조항의 대통령의 권한에는 조약이든 무엇이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은 대통령에게 비준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는 대통령이 비준한 것을 동의하느냐 안하느냐의 권한만 있습니다. 지금 비준권과 동의권을 혼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한 평양에서 개최된 6차회담을 TV에서 잠깐 중계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쪽에서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고 저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 동의문제와 관련해서 합의서를 국회동의까지 받으면 북한으로 하여금 마치 우리가 하나의 조선을 부정하고 두개의 조선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대남모략의 구실을 줄 여지가 있다고 하였는데, 아까 토론과정에서 발표자께서 말씀하시길 북한이 합의서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중앙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였고 승인이 동의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북한도 두개의 조선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동의할 때는 두개의 조선을 획책하는 아니고 우리가 동의하면 두개의 조선을 획책하는 것이라는 모순된 논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중 박사(세종연구소) :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가지 의문점이 해결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어의 선택이나 개념의 차이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7·4공동성명이나 이번에

나온 「비핵화 공동선언」과는 달리 여러가지 용어중에서 굳이 왜 합의서라는 말을 썼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아까 최대권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분쟁해결방법도 없고 국제적인 보장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왜 굳이 합의서라는 용어를 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정세현박사께서 상위, 하위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그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쪽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단지 양쪽이 이런 의향(intention)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일종의 의향서가 아닌가 하는데 대한 의문이 아직도 가지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작년 12월 이후 북한의 보도매체에서 나온 반응, 논조를 보면 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양쪽이 채택한 것이 마치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통일정책과 완전히 일관된 것처럼 주장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세현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쪽에서는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가는 길로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양쪽이 모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합의서의 채택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로 가는 길을 닦은 것이 아니냐 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서의 세가지 큰 조항이 화해,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인데 이것의 우선순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해석이 다르겠습니다만 화해와 불가침을 먼저 놓고 교류·협력을 뒤로 놓은 것이 혹시 이제까지 북한이 주장해 왔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불신을 해소한다는 점에 더 중점을 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 걱정됩니다. 또 기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까지 합의서나 비핵화공동선언을 해 온 것이 북한의 페이스에 우리가 완전히 말려들어 간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핵이 빠져나갔다는 선언이 있고 나서야 12월 31일날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를 하였고, 우리쪽이 먼저 서명을 하고 나서야 다음날 김일성 주석이 서명을 하였으며, 우리측에서 저쪽에 대해서 합의서가 채택된 사실을 선언하라고 요구하자 그 다음날 성명을 하는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어 온 점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문제가 지금 북한의 페이스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측의 답변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재식 교수(서울대) : 논문의 구성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제1회의의 핵심주제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최대권교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보다 정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첨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발표자께서 미처 답변을 안하셨는데 UN헌장 102조에는 모든 조약과 협정(every treaty and agreement)은 유엔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합의서의 성격을 논한다면 적어도 합의서의 내용, 중요성은 조약 혹은 모든 협정(agreements)의 격식에 알맞는 최상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약은 엄격히 말해서 정박사가 말하는 협의의 조약(treaty)이 붙어야 합니다만 그러한 의미에서 잠정합의서라고

하여 조금 흐리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약이든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잠정협정이든 현장이 요구하는 모든 협정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서명한 합의서와 동서독이 체결한 기본원칙에 관한 조약하고는 명칭자체도 대단히 다르고 또 내용도 대단히 다릅니다. 이러한 기본합의서가 현장이 요구하고 있는 협정 또는 모든 조약의 범주에 드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으로도 좋고 정박사의 해석으로도 좋고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이 성격을 이해하는데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의철(서초구) :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회의와 해당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6차 고위급회담시 우리 정총리가 북한의 김주석과 20분간 단독회담을 하였을 때, 김일성주석이 두번에 걸쳐 이야기한것 즉, ‘지난 일은 잊자’고 이야기한 후 조금 있다가 ‘과거는 백지화하고 모든 것은 협력해서 단결을 합시다’라고 말한 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까지 한 적이 없고 이번 회담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일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통일연구를 수행하면서 확실하게 분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 회 : 지명토론자중 보충질문을 하실 분 계시면 2분이내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영 교수 : 주석에게 조약의 비준권이 있다는 정세현 박사의 지적은 저도 북한의 헌법조항을 보았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

니다. 다만 제가 북한에서 합의서에 관한 국내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박사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의도를 의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북한처럼 좀 더 권력이 집중된 체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데 정치적으로 다원주의적인 우리사회에서 다른 식으로 처리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한 것 뿐입니다.

사 회 : 그럼 발표자께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특히 법적 성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어서 아까 배교수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최교수님께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부원장 : 순서를 거꾸로 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북쪽도 합의서의 내부처리를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잘했다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지적에 관해서는 이미 본문 내용에서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다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점과 당시에 여야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축하한다, 잘한일이더라고 발언했던 점을 감안해서 합의서뿐만이 아니고 비핵화공동선언 내지는 그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보고의 형식으로 14대 국회에서 총선이후에 지지결의형식을 밟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쪽이 처리한 것보다 훨씬 모양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서초구의 유선생께서 제기하신 과거를 덮자, 백지화하는 김일성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앞으로 많은 관련 발언과 연계시켜서 분석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단지

김일성이 말하는 과거는 6·25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일본천황이 통석의 념을 금치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본인 자신이 알고 있었듯이 김일성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6·25에 대하여 민족대단결 논리와 연결을 시켜서 얼버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북쪽에서 많은 해석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한의 언론매체, 보도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해 본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재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합의서의 유엔사무국 등록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을 등록해야 된다고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유엔헌장 102조에는 회원국간에 체결된 모든 협정이나 조약은 일단 유엔사무국에 등록해야만 유엔내에서 인용할 수 있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유엔의 이름으로 가령 감시군을 불러들인다든지 제제를 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북간 협의과정에서 유엔에 등록하는 문제에 대하여 합의가 된 이후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합의서가 사실상 의향서가 아니냐 하는 김덕중 박사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차회담에서 3차회담까지 우리가 내놓은 초안에는 합의라는 말 대신 협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나중에 남북간에 합의서냐 협정이나 선언이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를 하다가 결국 4차회담에서 합의서라는 형태로 하나의 문건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합의서가 의향서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사실상, 내용상으로도 협정이나 조약과 다름이 없는 것인데 이것을 조약이나 협정이라는 말을 쓸 경우에 상호국가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합의서라는 용어로 표현을 모호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합의서 채택이후 그리고 발효이후까지도 북한의 논조를 보면, 기본합의서에 대해서 피차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 다시 말해 우리는 이 기본합의서의 정치적 의의가 한민족공동체가 상정하고 있는 수순의 첫계단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북한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고려연방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역사적인 문건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각자 자기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고려연방제의 첫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변상황이라든지 남북관계의 현실로 볼 때 가능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주변정세 특히 구라파에서 시작한 이념과 제도를 초월한 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동북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체로 유엔가입 이후에 남북한이 상호국가성 내지는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남북관계가 고려연방제 방식으로 진전되기 보다는 먼저 남북연합, 국가연합방식으로 상호관계가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임을 고려

할 때, 북쪽에서 합의서를 고려연방제의 첫단계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북한주민을 위한 내부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장교수님이 지적하신 통일의 개념과 관련하여 통일을 과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통일은 결과로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된 상태 그 자체를 통일이라고 보통 이해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국내적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점에서 준비하는 과정도 통일의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판단에서 통일을 과정으로 보는 우리의 입장 내지는 견해가 이번 기본합의서의 원칙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협의의 통일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절대다수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광의의 통일이라는 의미에서 결과로서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까지도 통일로 보아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통일을 과정으로 보는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하는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 회 : 배재식교수님께서 제기하신 유엔사무국 등록문제에 관해서 최교수님의 견해를 시간관계상 약 1분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권 교수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는 비준문제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북한을 승인하느냐 하는 문제와도 별개의 문제로서 사무국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나중에 인

용도 하고 강제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지적하려고 하였습니다만 합의서를 잠정협
정이라고 한 것은 합의서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으로, 여기에는
전에 없었던 권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의서 자체가 의
미하는 바가 잠정협정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사 회 : 배교수님께서 기본합의서의 용어에 대해서 질문하셨
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남북간에 산출될 부속합의서를 상정
해서 편의상 구별해서 사용하기 위해 기본이라는 말을 쓰는 결
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 거의 통일되다시피 공식명칭이 기본합의
서로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가지 용어와 관
련하여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사회자로서 말씀드렸고 사실 오
늘 오전회의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자평하고 싶습니다.

남북합의서의 비준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의 상당부분을 해소시켜 주는데 이 회의가 기여한 바가 많
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
은 남북간의 상호국가성 인정을 강조하려는 입장에 있었고 북쪽
은 그것을 부인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기본합의서의 비준동
의 과정을 보면 저쪽은 거창하게 했고 이쪽은 아주 간략하게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입장이 뒤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서 혼선을 자아내고 있고 이것이 시비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토론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합의서가 꼭 북한처럼
비준동의될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다수의 견

해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꼬집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서 분단고착화의 책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비준동의 조치를 강구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궁색한 이야기이고, 우리 자세의 확립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출연기관의 책임자께서 나중이라도 혹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당하고 실질적인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세현 부원장 :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해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개의 조선을 확책하고 있다는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야 하는 주된 이유로 제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제 논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의 보조의 보조에 해당하는 이유로 말씀드렸던 것이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된 논거로서 북한의 대남비방 가능성을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 회 : 감사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당히 상반되는 견해가 나왔으면서도 상반되는 견해의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한 결론이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스스로 모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사족을 붙이지 않고 이번 회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 면

第2會議：南北間의 不可侵과 信賴構築의 展望

1. 主題發表 …………… 吳 寬 治(國防研究院研究院 研究委員)

2. 討 論

● 司 會：鄭 鍾 旭(外國語大 教授)

● 討論者：金 明 基(明知大 教授)

河 英 善(서울大 教授)

朴 英 鎬(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빈 면

南北間의 不可侵과 信賴構築의 展望

吳 寬 治

(國防研究院 研究委員)

남북고위급 6차회담은 예상했던 대로 3개 합의서의 발효에 그쳤고, 최대현안으로 부각되어 온 남북동시 시범사찰, 핵통제위 조기구성 등 북한의 핵武器開發阻止를 위한 실천조치는 다시 연기되었다. 더우기, 우리를 실망시킨 점은 북측이 최초부터 회담 전제 3대조건으로 내걸었던 주한미군철수, 탐스피리트훈련 완전 중지 및 문익환 입수경 등 방북인사 석방을 거듭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측이 핵문제해결을 지연시키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노정시킨 것은 金日成의 발언이다. 그는 명백하게 우리측의 핵不在宣言을 믿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남한내의 핵무기배치 때문에 非核化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다음달 19일에 핵통제위가 구성되더라도 언제 사찰이 실시될 것인지는 이 위원회에서 합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도 핵開發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에 앞서 시범사찰 실시를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조기에 저지하려던 우리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핵開發拋棄를 최우선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북

한의 핵무기보유가 초래하는 근본적인 안보상 위협증대를 사전에 저지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서 북한이 과연 합의서대로 평화공존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확고한가를 실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1. 不可侵의 履行과 保障

남북합의서의 제2장에 제시된 불가침에 관한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대방에 대한 武力使用 및 武力侵略 금지
- 紛爭의 平和的 解決
- 境界線 및 管轄區域 명시
- 南北軍事共同委員會 구성 및 운영
- 군사당국자간 直通電話 설치·운영
- 南北軍事分科委員會 구성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한 실천방안은 남북군사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되며, 3월 6일에 위원명단을 상호 통보한 후 첫 회의는 3월 13일에 가지게 될 예정이다. 핵문제는 3월 19일 이후에야 협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합의서의 불가침 이행 및 보장은 곧 평화공존에 관한 약속이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軍事的 對決과 이에 따른 긴장은 이의 근저에 있는 政治·經濟·社會的 對決이 表出된 것에 불과하다. 만일 정치적 대결을 해소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전환이 확고하다면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은 쉽사리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은 정치적 신뢰구축에 종속된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개선의 정치적 목표인 平和共存은 다음과 같은 軍事的 條件의 충족을 필요로 한다.

- (1) 非人道的 大量殺傷武器의 사용금지
- (2) 政治的 脅迫 및 威壓目的의 군사행동 포기
- (3) 武力侵略과 紛爭解決手段으로서의 무력사용 포기

평화공존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위의 세가지 군사적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한가지 방안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軍備統制를 추진하는 것이다. 군비통제에 의해 不可侵을 완전 보장할 수는 없으나 침략을 보다 어렵게 만들고 정치적 위기가 곧 군사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는 있다. 만일 남북한간에 합의 실천될 군비통제방안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이다.

- 非人道的 大量殺傷武器의 위협 제거
- 奇襲 및 大規模 攻勢作戰能力的 제거
- 偶發事故에 의한 군사충돌 방지

2. 北韓의 軍縮動機

6차 고위급회담에서 金日成은 핵무기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군축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북합의서에서 뿐만 아니라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군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축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는 愛憎併存的인 면이 강하다. 만일 북한이 대남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였다면 군축에 대한 그들의 유보

적 태도는 협상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 그들은 실질적인 남북한
군비감축을 행할 의사가 있으나,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
한의 대남정책에 획기적 변화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아직까
지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북합의서의 발효 사실을 북한주민에게 완전 공개한 점, 합의
서를 통일강령이라고 강조한 점, 총리회담의 지속 등은 분명 변
화의 한 단면이다. 그러나 합의서가 민족적 화해와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북한측의 고
려민주연방제 실현을 위한 일단계조치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또
한 북한이 기대하는 한국, 일본 등의 경제협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도 합의서는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합의서 채택으
로 북한이 기존의 대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약이 될 것은 하
나도 없다. 이점은 또한 평양회담에서 그들이 주장한 「일괄합의
동시실천」이라는 원칙을 주장한 데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군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
한 아무런 動機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武力과 顛覆活動에 의
한 대남혁명전략을 포기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자
신에게 불리한 軍備競爭을 止揚하고 軍備減縮을 추진해야 할 필
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이러한 인식이
곧 대남혁명전략을 포기하고 평화공존과 긴밀한 교류·협력을 추
진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장기적으
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군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계산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

로 판단된다.

- 과도한 군사비부담으로 경제성장기반이 약화되었고 주민생활수준이 저하된 점
- 현시점에서 북한이 누리고 있는 군사력우위가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경우 차츰 소멸될 것이며 결국 軍事力劣位를 초래할 것이란 점
- 군축을 평화공세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조기철수를 유도하고 우리의 전력증강을 저지시키고자 한 점
- 한·미동맹관계가 오히려 강화되는 가운데 한·소국교수립, 한·중경제교류증대, 소련의 와해, 지역분쟁해결을 위한 강대국들간의 협력증대 등 국제적 여건이 무력남침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
- 우리사회의 불안요소 - 과격한 노사분규, 반체제운동, 저소득층의 불만, 부패, 정치발전지연 등 - 을 증대시키기 위해 평화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점
- 권력승계기간중 국내외정세를 안정시킴으로써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확립하고자 한 점
- 한국, 일본 등의 경제협력을 얻어 과도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한 후 이를 기반으로 군사력증강을 재도모할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점

오늘날 북한당국이 당면한 최대현안은 어떻게 주민을 먹이고 입히며 재우느냐에 있음이 분명하다. 김일성은 6차회담 대표들과의 오찬에서 “조선사람 욕망은 흰쌀밥에 고깃국 먹고 기와집에 비단옷을 입으면 다야”라고 말함으로써 이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북한은 과거 30여년간 GNP의 20%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함으로써 방대한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산업기반투자가 소홀히 됨으로써 경제성장기반이 극도로 약화되었다. 특히 군사장비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 비능률적인 중공업건설은 주민생활개선에 필요한 농업과 경공업발전을 희생시켰다.

경제성장의 정체와 주민생활 수준저하는 이제 북한체제유지에 잠재적 위협으로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남조선 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했던 주민들은 자신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자유로운 남한동포들을 누구로부터 해방시키고 무엇을 위해 조국을 통일할 것인가에 대해 당연한 의문을 제기할 차례가 온 것이다. 특히 김일성과 같은 투쟁경력도 카리스마도 없는 김정일이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황하에서 북한지도층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군축에 의한 군사비의 대폭감축밖에 없다.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하에서 격심한 남북한 군비경쟁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군사력 우위 소멸은 물론이고 나아가 劣位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산업기반마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군비경쟁의 결과는 북한체제붕괴로 나타날 것이며, 북한지도층은 싫든 좋든 이를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6차회담에서 김일성이 행한 성명에서 군비경쟁지양을 언급한 사실도 이의 한 예이다.

북한은 그들이 군사력 우위를 향유할 수 있는 향후 몇년간에 있어서도, 적화통일을 위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역마찰 등 양국간의 현안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한·미동맹체제에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고, 이러한 전략정세하에서 북한이 승산없는 전쟁을 도발하지는 못할 것이다. 더우기 동서냉전체제가 소멸되고 소련이 해체된 국제정세하에서는 명백한 북한의 침략전쟁을 지원해 줄 강대국도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中國조차도 자체의 경제발전을 희생시킬 것이 분명한 서방진영과의 관계악화를 무릅쓰고 북한의 전쟁모험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걸프전에서 얻은 교훈의 하나는 지역분쟁방지를 위해 강대국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며, 북한이 이를 모를리 없다.

만일 북한이 중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남침위협보다는 위장된 평화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우리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다. 북한은 평화공세에 의해 우리사회의 취약점을 이용하고 불안과 반미운동을 선동할 수 있다. 북한이 이러한 평화공세를 통하여 우리의 경제가 일시적으로 겪을 수도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한다면 우리체제 자체의 전복위험이 급격히 증대될 수 있다. 북한지도층도 이러한 평화공세가 변화된 대내외 여건하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이를 위해 어느정도까지는 군비감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가까운 시일내에 북한에서 권력승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김정일이 권력기반을 강화하기까지 남북한간에 극한적 대결상황이 발생함으로써 대외정세가 불안하게 됨을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 더우기, 김일성은 자신이 추구해 온 군사대결정책을 체면상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운데 비해 김정일은 대남평화공세 정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다. 금

년도 신년사에서 김일성이 합의서를 「통일실현의 새로운 이정표」라느니,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 강령」이라고 주장한 것도 권력승계기간중 대내외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군축의 추진에 의해 평화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한국의 경제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核武器問題가 적절히 해결된다면 日本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전면적인 사회개방을 피하면서 경제특구설치 등에 의해 필요한 경화를 획득하고 경제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일본 등의 경제협력에 의해 국력이 증대된 다음에는 한국사회 내부사정과 대외여건 여하에 따라서는 무력증강을 포함한 대남혁명전략으로 재선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반요소를 감안할 때 북한당국도 한반도 군비통제가 기본적으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에게도 군비통제를 추진할 기본적인 동기가 존재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동기에 의한 북한의 군축제외가 결코 대남혁명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한 군축이 평화공존을 밑받침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3. 展 望

대남정책 전환여부와는 관계없이 북한도 기본적으로는 남북한 군축을 추진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군축에 응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의 우세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아직도 열려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과거 40여년간 북한의 남침을 억지해 온 것은 韓·美聯合防衛體制였다. 그런데 북한은 이 체제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먼저 북한은 한국이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하며,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경제적 취약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대북경계심이 희박할 뿐더러 순진한 민족주의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을 세뇌시키고 선동할 수 있으며 기만하고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전후세대들이 이제 전체인구의 70%를 점하게 되고,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인식이 낮음으로 인해 적정한 수준의 국방비 지출이 점점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국민들의 사회 복지향상에 대한 요구는 증대할 것이다. 그 결과 향후 대북군사력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력증강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 북한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한국사회의 취약점으로 인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또한 미국이 국내적 요인으로 인해 對韓安保支援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지금 美國민들은 그동안 미뤄둔 국내문제 - 산업경쟁력 강화, 마약·범죄·에이즈문제, 교육·사회보험문제, 환경오염 등 -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 없으며 자유진영 수호자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다. 더우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우방국을 위해 미국이 군대를 주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경제력이 증대된 우방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북한의 군사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여론은 조만간 주한미군의 대폭적 감축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美國第一主義」를 표방하는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감축이 실행될 것이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배치된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는 한반도 유사시에도 시의적절한 군사지원을 제공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따라서 남북한 군축은 당분간 실천될 수 없을 것이다. 6차회담에서 연형묵이나 김일성이 모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이나, 「일괄함의 동시실천」을 주장한 것이나, 핵시설에 대한 시범사찰을 거부한 것도 이런 북한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북한의 군축에 관한 유보적 태도는 시기상조적인 우리의 경제협력이나 일본의 경제지원에 의해 더욱 경직화될 수 있다. 적극적인 경제교류나 경제협력에 의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포기케 하거나, 사회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남북군사분과위가 설치되어 군비통제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하면 북한측의 태도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측의 자세가 어떻든 우리로서는 기습을 방지하고, 단기간의 전쟁준비만으로는 대규모 공세작전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며, 남북한 간 군사력 불균형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군비통제방안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잘 알려진 신뢰구축조치들과 함께 양측 부대전개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로써,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은 각각 다음과 같은 부대전개 제

한지대를 설정하여야 한다.

- 0 ~ 50Km : 보병사단 9개
- 50 ~ 100Km : 기계화 보병사단 3개
- 100 ~ 300Km : 상비전투부대 배치제한
- 300Km 이상 : 잔여부대 배치

군사력감축을 통한 불균형을 제거하고 군사력 규모를 방어수준까지 축소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것이나 단기간 내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뢰구축조치와 함께 부대전개 규제조치가 동시에 실시되고 지상 및 영공감시·검증이 이루어지면 기습이 방지되고, 상당기간에 걸친 사전 전쟁준비 없이는 대규모 공세작전은 개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많은 고려사항이 있었을 테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 궁극적인 대량살상 무기의 확보로써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 대남테러 및 재래식 전력에 의한 남침실패시 한·미연합군의 북진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점
- 주한미군핵 및 주한미군철수 흥정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 핵무기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한국내 반핵·반미운동을 고무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점
- 핵테러 협박을 통하여 필요시 한국 및 서방측으로부터 대북유화정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점
- 핵무기 보유에 따른 정치·외교적 지위격상을 기대한 점
- 핵무기, 핵물질, 제조기술 등의 수출에 의해 외화 획득을

기대한 점

위에 제시된 몇가지 이유만 고려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명백하다. 북한이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군사적 제재위협이 북한체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을 만큼 심각하게 현실화되었을 때에야 굴복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제재조치가 이루어질지 불확실하고, 설혹 그러한 제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북한은 판단할 것이다. 북한은 이 기간에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 진행시키면서 일본과의 국교수립교섭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고, 對美협상을 통해 미국의 양보를 최대한 얻어내며, 한국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한 평화공세를 계속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로 인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거나 대폭적인 군사력 감축을 포함한 남북한 군비통제를 가까운 미래에 받아들일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第2會議 討論

정종욱 교수(사회) : 대단히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결하게 요지를 발표해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긴 요약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사회자로서 토론을 위해 발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박사께서는 불가침이 궁극적으로 군축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문을 집필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불가침이라는 것이 평화공존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군축이 지향하는 목표는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고, 기습능력이나 대규모의 공세적인 군사력을 제거하는 목표를 가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우발사고에 의한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군축의 방향은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망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군축에 호응해 올 가능성을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대단히 비관스러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북한이 군축에 대하여 조심스런 호응을 해올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장기적인 이유는 대략 7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북한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중한 군사비를 줄이기 위한 것. 둘째, 현재 남한보다 유리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축을 실시함으로써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 셋째, 남한의 전력증강을 저지한다든가 미군의 조기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평화공세 수단으로서도 북한이 상대적으로 군축을

추진해 올 가능성. 네째, 기본요건과 관련지어 무력에 의한 통일목표달성이 점점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주변여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도 북한이 군축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섯째, 주변에 대한 대응전략뿐 아니라 남한의 정치·사회적 불안을 역이용하는 대남전복활동의 일환으로서도 군축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섯째, 북한의 내부사정과 관련지어 특히 김정일의 승계기반을 확립하는 측면에서 군축을 추진함으로써 평화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마지막으로, 북한의 군축주장은 한국은 물론 일본이나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북한이 군축에 호응해 오는 대신 전통적인 대남혁명 통일노선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박사께서는 강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도 무력통일을 위한 기회가 상존하고 있다는 그릇된 정세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남쪽의 경제적인 취약점,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이후에 닥쳐 올 여러 분야에서의 수입개방압력 등이 남한의 경제적 취약점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이고 나아가 민주화가 추진되는 과정속에서 안보의식이 약화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방비의 감축압력이 증가되어 전력증강의 지속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세계전략, 특히 대아시아전략이 과거와는 달리 미국우선주의 특히고립주의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 약화되어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오히려 약화될 소지가 있는 점을 북한쪽에서 「기회의 창」으로 오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군축의 방향과 관련하여 군비통제라는 것이 기술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남북한 공히 특히 남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면서 특히 우리가 추진해야 될 군축의 방향은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구하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기습공격능력을 제거·약화시키고, 또 대규모 공세능력을 제거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나아가서 남북한의 군사적인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박사께서는 부대전개 제한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은 휴전선의 바로 북쪽에 대규모의 공세전력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세전력을 북한이 적어도 50km이북 지역으로 후퇴시켜야 하며, 특히 공세적인 군사력에서는 휴전선 북방 50 내지 100km지역에 기계화부대 배치를 3개사단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 부대배치 제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감시와 검증이 철저히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할 때 북한이 노리는 목적은 대체로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북한의 체제보장, 궁극적인 군사수단으로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고 체제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두번째, 만약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한·미연합군의 북진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세번째, 남한에 배치되어 있는 핵의 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북한이 핵보유를 서두른다는 한국내 반핵·반미운동을 조장할 수단으로서 핵개발 내지 핵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서방진영의 대북유화정책을 유도할 그런 목적으로, 다섯번째로 정치·외교적으로 북한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도 핵개발이 고려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핵과 관련, 여러가지 수출을 통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화획득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현실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핵개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가지 기대효용치 때문에 북한이 단기간내에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책문제에 있어 오박사는 북한이 핵무기개발 포기를 실천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무제한 불시사찰이 허용되어야 되고, 이산가족문제도 재결합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사확인이나 상봉 등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남북한간에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전에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시에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력,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오박사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요약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대체로 이러한 요지로 오박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기대학교의 김 명기교수께서 약 10분 정도로 시간을 제약해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기 교수(지명토론) : 오관치 박사님께서 예리하고 창의성있는 내용을 발표해 주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방면의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체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박사께서 발

표하신 내용중 제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을 확인하고, 두번째는 조금 의견을 달리한 점을 지적하고, 끝으로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국제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제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발표하신 내용중 이번의 기본합의서가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화해·협력의 과정을 규율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법규범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음에 발표중에는 정확히 표현하지 않았습시다만 정치적인 신뢰구축이 군사적인 신뢰구축에 종속된다고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또한 기본합의서가 북한입장에서 볼 때 고려연방제 실현을 위한 한 단계로 간주하여 그쪽에서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점에 관해서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가장 타견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방부대의 후진배치 내지는 그 전개지역의 제한문제는 저희 국제법학계에서는 군축의 공간적 제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 비전문가이지만 한가지 더 제가 추가한다고 하면 전투비행장의 후진배치도 고려하여 봄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군축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3가지 전제가 관철될 때까지는 고위급회담을 어느 정도 지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니겠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맨 마지막 결론에서 낙관할 것은 아니라는 전망을 하셨는데 그 점에 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전략을 수정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준 것은 아니더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기본

합의서는 제1조에서 상호 실체 인정 제2조에서 내부분제 불간섭 제3조와 4조에서 전복 및 비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범상으로는 북한은 대남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별 제약을 가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단한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런 점이 제가 오박사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소견 하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군사적인 신뢰구축과 정치적인 신뢰구축을 시간축에서 봐서 어떤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군사적인 신뢰구축에 앞서서 정치적인 신뢰구축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3가지를 근거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론적으로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그 뒤에 군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군축을 논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실제상 전쟁을 하는 국가들간에 군축을 논의한 역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축의 의미를 살리자면 평화체제로 전환한 후 군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번째로 기본합의서 제5조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쌍방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에 반해서 제12조는 군사적 신뢰구축 내지 군축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군사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1991년 9월 24일 제47차 유엔총회에서 노태우대통령이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로 연설을 하면서 세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의 첫째가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것이었고 두번째가 군사적인 신뢰구축과 군축이었습니다. 세번째가 사람·물자·정보의 교환이었습니다. 물론 이 연설이 비중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꼭 볼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타 문제들을 논하자는 것으로 받아 들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번 기본합의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군축문제를 다루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북한은 그러한 입장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의 입장도 만일 그러한 입장이라면 지금 제가 지적했던 근거들을 고려할 때 잘못 표현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박사님이 그동안 전문가로서 많은 연구를 하시면서 직간접적으로 접한 정보에 의해서 우리 정부도 군축에 앞서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먼저 바꾸려고 하는 그런 태세가 되어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 회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의 하영선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하영선 교수(지명토론) : 오늘 모임의 제목이 제3회 국내학술회의 「남북화해·협력시대, 우리의 좌표와 과제」로 되어 있으므로 발표한 내용을 학술논문으로 인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식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분석한 내용을 서

술하는데 사용되는 언어는 일단 그것이 학술논문인 경우 더 강렬하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차가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적이거나 선전적인 차원에서는 더 강렬하게 설득하기 위해 더 강렬한 용어를 사용하겠지만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더 차가운 용어구사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간혹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페이지를 보면, “남북합의서의 채택으로 북한이 기존의 대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약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신중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군사적 제재위협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따라서 이것을 단정화하려고 하는 경우 명확한 정보차원에서의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지 모릅니다. 북한내부에서 극소수가 관여하고 있는 핵정책의 결정과정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것이라면, 오박사님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 쪽을 설득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논리전개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문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비중을 많이 둔 것이 군축부분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결론부분에서 제기한 핵문제인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조금 달리 생각하고 싶다는가, 또는 오박사님이 분석한 것에 대하여 조금 더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면 어떨 것인가 하는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축부분에서 오박사님이 사용하신 틀은 군축의 동기를 분석하는 경우에 7개의 촉진요인과 하나의 억제요인 즉 최대억제요

인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억제요인이 일단 키를 넘어서서 촉진요인 7개를 단연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북한이 군축에 호응해 올 것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술적 차원에서 북한군축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즉, 학술회의 형식면에서 말씀드리다면 이 분석들은 조금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조금은 평면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정태적인 성격을 가진 분석들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북한의 군축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틀을 조금 더 입체 내지 구조적이고 동태적인 분석모델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보완, 완성된 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KIDA나 민족통일연구원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국내연구소들이 조금 더 공동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조적 또는 입체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가령 7개의 촉진요인과 하나의 최대억제요인이라고 하는 것의 상대적인 비중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면에서, 그 요인을 설정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 비중설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견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최대억제요인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하나는 미국의 역할문제이고 또 하나는 국제정치경제의 어려움인데, 이것이 가지는 비중과 북한이 겪고 있는 7개의 촉진요인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먼저 전제하지 않고 그 요인들의 비중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상당히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군축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군축이라는 면으로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의미에서 군축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북한 변화분석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큰 틀을 우리가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민족통일연구원에서도 그러한 작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변화분석의 틀에 구조적·동태적인 분석틀이라고 하는 것의 합의기반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진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문제로서 북한에서 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학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 변하고 있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북한변화의 분석틀을 설정하는 경우에 거기에는 아마 북한체제라고 하는 것이 기반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토대라 불러도 좋고 일종의 지주라고 하여도 좋지만 약 5개의 지주나 틀을 쉽게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적인 기반 내지는 토대, 또 하나는 당, 관료조직을 포함한 정치적인 조직, 그 다음에 폭력적인 토대, 기반 등 소위 군사적인 기반, 또 하나는 주체 또는 김일성이즘을 중심으로 한 이념적 기반과 같은 5개의 기반이 작동, 북한의 체제를 떠받들어 왔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에 의해 지적되어 오듯이, 80년대 중반이래 또는 90년대이래 이러한 지주의 적지않은 부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로 빨리 흔들리고 있으며 흔들리는 수순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수

순과 속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가 충분치 않아 상상을 동원해서 말한다면, 어쩌면 북의 변화는 지금 3개의 단계를 거쳐 변화하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겪었던 것이 1단계 변화라고 한다면 5개의 지주중에 명백히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은 국제적인 기반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체제유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적어도 일·미를 포함한 선진자본국가와의 관계개선 모색이라고 하는 변화를 우리가 명백히 보고 있는 것은 일단 긍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 자기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2단계에서 약간 넘어서고 있는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단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변화의 양태들이 나타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가장 구체적인 것중의 하나는 북한이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한도내에서 남북관계를 재 조정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한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5개의 기반중 국제적 기반은 엄청나게 흔들렸고 경제적 기반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정치·경제·이념적인 기반도 완전히 확고한 반석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2차적인 부분적인 변화의 단계를 거치면서도 북한의 체제유지에 결함이 지속되거나 강화되는 경우에 결국 제3단계의 변화, 즉 국내체제유지가 아닌 국내체제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더이상 국내체제 유지가 안 된다고 하는 아이러니를 북한이 겪을 수밖에 없는 단계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까 오박사님도 지적하신 실질적인 남북군축 논의의 장이 열리는 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와 3단계의 논리적인 수순을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 기간의 설정의 문제는 어찌면 예상외로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충분히 해야 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1단계와 2단계의 합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에 대단히 어렵다고 한다면 따라서 하나의 억제요인에 준 비중평가에 있어서는 제가 입장을 약간 달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넘은 것 같아서 핵무기문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신도 형식상 핵무기를 전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자신이 없어서 최근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핵문제의 경우도 오박사님이 사용하신 분석의 틀은 7개의 촉진요인과 하나의 억제요인으로 아마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선 7개의 촉진요인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가 핵논의 특히 북한의 핵카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연 북한의 핵카드라고 하는 것이 주로 정치적인 목적이나 수단으로 분석할 것이냐, 아니면 주로 군사적인 수단이나 목적으로 분석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복합적인 것이되 정치적인 목적이 주가 되고 최악의 사태에 가서 그것이 보조적인 의미에서 군사적인 수단으로 상정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까 군축에 관한 7개 촉진요인의 상당한 부분은 그 개념정립에 있어서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변수설정을 해야 된다

고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핵의 경우 7가지 촉진요인중 2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안보문제와 연관지어 핵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스스로의 생존전략 문제나 정치적 카드로서의 주한미군핵의 철수나 또는 미·일관계에 있어서의 카드로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결과적으로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북이 노리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억제요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저는 오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국제정치·경제적인 제재가 가지고 있는 비중 또는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군사적 수단의 억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효과때문에 그 카드를 쓸 수 없고 거기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해결·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핵개발포기, 이산가족문제 그리고 기습공격의 능력을 통제하는 것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흡사 북에서 팀 스파리트훈련 기간 동안 고위급회담을 거부했던 것처럼, 다음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연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것는가 하는 문제도 조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지나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만나는 장의 제도적인 설치는 그것 자체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결조건들은 경제협력이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의 전제조건으로서는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고위급회담의 메

카니즘을 중지하는 것 자체는 그 앞의 몇 수순이 더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소 지났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토론이 되어서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오박사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하시게 되면 보다 차가운 언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지명토론은 민족통일연구원의 박영호 박사입니다.

박영호 연구위원(지명토론) : 합의서가 발효된 후 지금 이 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불가침 또는 상호 정치적 신뢰구축 등을 포함하는 군비통제, 전반적으로 군축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최근 여러분의 공통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신중해야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합의서가 형식적인데 그치느냐 아니면 구체적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구체적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합의서 자체를 가지고 구체적 실천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명목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구체적 실천조항은 앞으로의 문제로서, 오늘 이 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불가침 또는 정치적 신뢰구축도 다른 분야에서 공동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기로 합의가 되어 있듯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그러한 틀을 갖추었다는 점에서는 신중한 낙관론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기본입장입니다. 낙관적인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거쳐서 군축을 이루기 위한 실천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박사님 글의 전체적인 어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신중한 의미에서의 비관이라면 저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만약 현재 구체적인 실천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비관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이해의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군비통제나 군축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남한에 유리하고, 결국 한 쪽이 이득을 얻으면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컨대, 오박사님께서 여러가지 군축의 촉진요인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시기별 여건변화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그것이 2~3개월인지 1~2년인지 구분하기 어렵지만—미국선거에 따른 미국제일주의와 남한의 경제적 사정 즉 한국의 경제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군축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은 시간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비약된 전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사적 신뢰구축은 북한이나 남한입장에서 볼 때 남북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갖는 것도 보다 균형된 방안을 개발해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번째로, 이것은 군비통제나 군축을 보는 남북한의 시각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북한의 경우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라는 뜻은 이루었습니다만, 남한의 경우 오늘 오박사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신 기습공격의 방지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군사력이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결국 군축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축 자체도 시행하기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인데, 아까 오박사님 말씀 중에 약 2000년 정도가 되면 남북한 군사력이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여러번 있었습니다만, 80년대, 80년대 중반, 90년대 이제 90년대 중반으로 향해서 가니까 또 다시 2000년대에 가서야 군사력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야 장기적으로 군축의 가능성이 있다는—저는 전반적인 남북한의 군사력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그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된다면 군사적 신뢰구축은 사실상 당분간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박사님은 기습방지를 위해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것들이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핵문제와도 관련이 됩니다만 만약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남한이나 미군쪽으로부터 느꼈기 때문에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기습방지라는 것도 북한이 그러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제안도 한국입장에서 제시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군비통제논의에 있어서 상당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대남혁명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폭력적인 혁명전략보다는 비폭력적 혁명전략, 남한의 경제, 미국의 선거 등에 따른 하층 통일전선전술이 전혀 배제되지 않고 있지만 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북한은 그들이 군사력 우위를

향유할 수 있는 향후 몇년 간에 있어서도, 적화통일을 위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씀하시고는, 전망부분에서는 「기회의 창」이 열려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기회의 창이 암시하는 바는 우세한 군사력을 이용한 적화라는 폭력적 혁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인가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한미군철수문제에 대해서도 앞부분에서는 한·미군사동맹관계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하시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미국제일주의의 영향 때문에 한·미연합체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축은 당분간 실천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남북한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국들의 국제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군비통제를 위한 상황은 일단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사적 신뢰구축, 더 나아가서 군축 부분에서 남북이 협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지금까지의 대치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북한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정치적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신중한 낙관론을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군비통제과정의 중·장기적 시각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핵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전제로 하고서 일시적인 관계악화를 걱정해서 지나칠 정도의 대응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계개선의 목적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는것이 군사적 신뢰구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신뢰구축의 주제와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예방하고 군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선에서 적어도 군사적 차원에서는 북한에게 절대적인 원칙, 투명도의 확대와 같은 원칙을 준수해 가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 회 : 오관치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오관치 연구위원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합의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김명기 교수와 하영선 교수께서도 똑같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북한의 기본 대남정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합의서 채택 그 자체만으로는 북한이 기존의 대남전략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과거 무력남침에 대하여 절대 호언하였거나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며, 기타 한민전을 통한 각국 방송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합의서가 북한의 대남전략에 제약은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합의서를 실천해 가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의도가 나타날 것이고 또한 실제 남북한관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희망하고 저도 그렇게 될 것으로 바라지만 합의서 채택만으로서의 제약을 받을 것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합의서가 갖는 정치적·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번째 김명기 교수님께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먼저 대체되

고 그 다음에 군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신 말씀과 관련하여 국제법학자간에도 의견이 서로 다른것 같습니다. 꼭 평화협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평화협정인 것은 아니고 사실상 평화협정과 같은 기능을 지닌 것이면 평화협정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 의견이 옳다고 봅니다. 정전협정에 의해 지금까지 평화가 유지되어 왔고 새로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우리가 평화체제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이니까 우리 보고 평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깨뜨릴지도 모르는 불가침제의를 한 것이고 만일 지금이 전쟁상태라면 그 소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도 사실은 이율배반적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유지되었으니까 평화를 깨뜨리는 불가침을 약속하자는 것이고 또 미국보고는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면서 미국에 제안한 평화협정 5개항을 보면,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의 내용이 아닌 것을 사실상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생각에는 정전협정이 현재 우리의 국익측면에서는 평화협정으로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른 것을 추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서로 평화협정을 맺어서 우리에게 이득될 것도 없는 유엔사해체를 거론하는 것은 좋으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유엔사문제를 거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유리한 시점에서 유엔사해체를 거론하는 것은 좋지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유엔사문제를 거론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국제법도 사실상의 효력을 인정하면 되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게 해석을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외에 크게 구애를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휴전협

정을 평화협정으로 먼저 바꾸라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하면,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 긴장완화가 확실시되고 또 보장되었다는 판단이 들면, 정전협정 제 60조 2항에서와 같이 정전협정을 군사적 분쟁방지와 같은 협정으로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무장지대의 관리라든지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유지군 같은 것을 비무장지대에 배치하자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도입한다면 규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교수님은 언제나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평소 생각이 너무 평면적이고 단순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군비통제 전망이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을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교수님의 코멘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박영호 박사님도 대부분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고 합의서가 틀을 갖추었다는 말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 저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틀을 갖추었다 하면 그 틀은 모든 것을 제약하게 마련입니다. 집을 지은 것과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지으면 틀이니까 집안에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제 주장은 남북합의서는 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북합의서는 한반도의 평화공존에 필요로 하는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나열한 데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가침하자는 것은 약속에 불과한 것

이고 그것이 틀이 되었으면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제약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제약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틀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성급한 기대에 대한 우려를 놓고 제 입장이 비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의서가 갖는 정치적·역사적인 의의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성급한 기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제 주장을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간에는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흔히 신문에서도 상호불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당연히 불신을 가져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례를 든다면 7·4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그 순간에 DMZ에서 땅굴을 팠다는 점입니다. 땅굴이 단순히 1개 대대를 내려보낼 수 있다든가 후방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배신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화해나 민족대단결을 외치고 있는 사이에 땅굴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랑군사태문제, KAL기 폭파문제, 김신조사건문제, 그것을 넘어서 6.25 청산문제에 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을 속이고 북한에 대해서 꾀꾀이 획책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우리에게 전혀 불신을 가질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불신이 아니라 우리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불

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북한이 우리에게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의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흡수 통일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흡수통일하겠다고 나선 적은 없습니다. 북한 스스로가 붕괴될지 모르는 것은 자기네 사정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 회 : 감사합니다. 처음에 약속드린대로 앞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지명토론해 주신 세 분께서 추가로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교수 : 오박사님께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하거나 합의서에 표시된 것으로 보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뜻이었고 그것에 관한 오박사님의 개인적인 의견과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학술적인 국제법상 논쟁을 벌리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박사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국제법학자들간에 한국이 전쟁이 다 끝났다거나 평화가 확립되었다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공식입장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에게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해 왔고 74년부터는 대미 협정을 맺자고 제의해 왔을 때 우리는 평화가 회복되었으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고 대응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평화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용인을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오박사님도 이번 기본합의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5조에서 당사자간의 평화협정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현존 정전협정을 지켜나가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는 평화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회복되었으므로 앞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학술논문이나 교실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 즉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다음에 군축을 들어가야 되느냐, 군축부터 진척해 나가면서 귀추를 봐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국가정책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것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을 갖고 있는가를 혹시 알고 있고 그것을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이었을 뿐입니다.

사 회 : 하교수님이나 박박사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박영호 연구위원 :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어사용에 대해서는 적용의 엄격성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박사님이 지적하신대로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테러를 가했다든가 사기나 기만전술을 쓰거나 한 적은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오박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불신을 조장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흔히들 말씀하시는 흡수통일하지 말자고 할때, 분명히 70년대 중반, 적어도 80년대초에 까지만 해도 두려움이란 북한에 대한 우리의 두

려움이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사적 신뢰구축이 논의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북한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남한, 한·미 관계 아니면 그 주변상황 등에 대한 인식도 고려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 회 : 한 15분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앞에 계신 분중에서 주제를 발표해주신 오박사님이나 혹은 토론에 참가해 주신 세 분에 대해서 제기하고 싶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회의진행상 아주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분 질문이나 코멘트 받겠습니다.

이 장 교수(국민대) : 국방부에서 근무하실 때부터 오관치 박사님의 글을 많이 보고 읽었습니다. 오관치 박사님은 줄곧 군비를 증강하자는 이론을 쪽 냈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의 핵철수문제와 관련하여 핵철수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선언이 되었고, 또 2월달에 남북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도 발효되어 오늘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듣게 되지 않나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 보니까 오박사님은 여전히 군사력을 증강해야 하며, 또 군비증강을 해야 우리가 이복하고 군사력이 비슷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 정신이라든지 국제적 흐름이라든지 민족적 차원에서의 최근의 움직임을 좀 경시하는 오박사님 얘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개적으로 밝힌 국방비 사용액은 91년도 군사비가 7조 7천억원인데,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6·25때와 비교해서 핵무기는 철수했으니까 제외하더라도 군사력·화력이

100배로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예산을 더 투입해서 군비증강을 하는 것이 민족이나 남북관계에 좋은 해결책인지 이것에 대해 우선 묻고 싶습니다. 또 6.25가 났을 때 저는 7살이었는데, 3년간 많은 사람이 죽고, 온강산이 초토화되는 등 참상을 겪었는데 재래식 무기의 화력만 따지는 현 시점에서 군비증강을 또 해서 만약에 전쟁이 날 경우를 상정한다면, 일단 전쟁을 방지하는 것은 반드시 군비증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박사님도 전방부대의 후방제한이라는 좋은 제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오박사님은 군비통제 전문가가 아니고 군비증강의 옹호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냉철한 입장에서 이런 것이 합리적인 계산인지 판단해야 하고 교통문제, 사회복지문제 등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남북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군비증강에 대한 제 생각에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 : 백상창 소장님, 한 2분정도로 발언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상창 소장(한국사회병리연구소) : 각 국가간에 전쟁을 하지 말자는 브라이언-켈로그조약을 맺자마자 몇년 후에 전쟁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간에 합의서가 채택 발효되었지만 며칠 전에 정총리가 평양에 갔을 때도 김일성은 연형묵하고 나이차이가 몇 살인가 묻고 5살 차이라고 하니깐 그렇다면 친구해도 된다든가 제주도가 열대지방인지 묻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의 정신허 발달수준은 193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정치학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김일성은 오직 만주

에서 통치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통치하는데 성공했고 아까 오관치 박사가 현명하게 주장하신 것처럼 내가 볼 때는 우리는 북한을 믿을 수 없으며 북한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불가침에 대해 합의하려면 북한을 제약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내용상 나열에 불과했고, 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불리하기 짝이 없는 시점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국제사회에 변명할 여지를 주고 일본과 미국과 경제협력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남한이 이용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오박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까 하영선 교수가 동태적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오관치 박사님도 존경할만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에 대해 문의한 입니다만, 동태적 시각으로 보려면 구조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태적 구조분석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하 교수님께서 북한에 있어서의 5가지 요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김일성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북한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과학적인 구조분석에 입각한 동태적 시각과 이에 기반한 대북관계 대처 방안이 민족통일연구원에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 : 마지막으로 한 분의 코멘트만 듣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상 한 분에 한해 2분내로 코멘트를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련 교수(통일연수원) : 김명기 교수님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 다음에 군축

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냐의 수순문제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평화협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후처리 조치라고 볼 수 있고 불가침협정은 전쟁의 예방조치입니다. 전후처리의 조치인 평화협정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6.25는 승패자가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후배상 문제, 국교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택일한다면 불가침협정을 택하여 광의의 불가침협정에서 군축문제가 다루어지면 평화협정도 내포,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위를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사 회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끝내기 전에 여러분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오관치 박사님이 2분정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치 연구위원 : 김명기 교수님이 제기하신 정전협정체제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과 우선순위 문제에 대하여 제 개인적으로는 군축 등에 의해 군사적 긴장완화가 분명히 되고 따라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충돌과 전쟁의 위험이 없다는 확신이 선 다음에야 정전협정에서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여기서 평화체제란 말은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장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경제학을 공부해서 조금은 경제를 이해하는 편입니다. 7조원의 국방비중에서 1%면 700억이고 5%면 3,500억인데, 과기처의 연간예산의 배에 해당됩니다. 제 소견은 5%만 절약해서 과기처에 주면 첨단기술을 상당히 개발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영선 교수를 위시해서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도 지금 심각한데 또 거기에도 일본의 군국주의도 대처해야 한다고 한다면 국방비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신 분들에게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북한이 더이상 군사적인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주장은 전력증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노력을 당분간 계속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평화공존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때가 온다면 군사비를 줄여도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북한을 진지한 군비통제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력증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장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과거 10여년간 전력증강문제를 연구하여 왔습니다. 만약 미국이 과거와 같이 중동이든지 기타 지역문제로 인해 유사시 개입이 곤란해지고 그러한 상황을 북한이 이용하려고 한다면, 저는 1주일 이내에 서울이 고립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이 1주일 이내에 고립된다면 그 다음은 더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장 교수님, 그러한 점을 지난 10년간 저는 느껴 왔으며 그러한 것을 학자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 회 : 아까 백상창 박사님이 구조적으로 연구하라고 하신 것은 하교수도 구조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답변기회를 안드리겠습니까. 김명기 교수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명기 교수 :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가지점을 들어서 평화협정체결문제가 군축문제보다 더 앞선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린 것은 북측이 그런 주장을 해 왔을 때 세가지 근거로 우리가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었지 결코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군축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표하신 오관치 박사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질문하신 분과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 회 :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사회를 보았던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요점만 결론을 대신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회를 보면서 주제와 관련하여 대단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이후에 국내에서 일고 있는 찬반의 따가운 시선이 있고 불가침문제와 군축문제는 실질적인 문제로 기본합의서 발효이후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될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찬반의 논의들이 아주 수준높게 제기되었고 그것이 앞으로 남북한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 주제와 다소 동떨어지지만 오늘 제1회의에서 제기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기본합의서의 성격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가 저희 회의에서도 대단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기본합의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오관치박사의 논문을 읽고 발표를 듣기에 기본합의서 자체가 갖는 남북한관계에서의 큰 의미 그러한 것을 조금도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기본합의서 이후에 닥칠 여러가지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가 가져왔던 과거 냉전시기의 쓰라린 경험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기본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정세현 박사의 아침 논문에서도 잘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여건의 변화 즉 사회주의권의 몰락, 북한내부의 여러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합의서가 7·4남북공동성명과는 달리 정부와 정부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효된 문서라는 의미에서 과거 7·4공동성명과 이번 합의서가 갖는 의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교류·협력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북한이 대단히 꺼려서 부정적으로 보아 왔던 것을 협의를 거쳐 문서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저는 남북한관계가 한단계 더 평화공존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는 닦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고 협상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있었긴 하지만 남북한관계가 주변의 탈냉전 분위기에 맞추어 가지고 스스로 남북한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일단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앞으로 핵문제, 군사신뢰구축, 군축문제, 그 이외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 등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으면서 남북합의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의 한 장이면서 또 앞으로 남북한이 헤쳐나가야 할 긴 역사의 여정의 시작 즉 하나의 단계를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는 출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라고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오늘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오관치 박사님, 수준높은 토론을 해 주신 세분 지명토론자,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들려

주신 앞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 2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 면

第3會議：南北交流・協力の展望と課題

1. 主題發表 …………… 具宗書(中央日報 論說委員)

2. 討 論

- 社 會：鄭 鎮 渭(延世大 教授)
- 討論者：金 國 振(外交安保研究院 研究室長)
李 泰 旭(西江大 教授)
尹 德 熙(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빈 면

南北交流·協力の 展望과 課題

具宗書

(中央日報 論說委員)

최근 南과 北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발효시키고 이런 합의를 구체화하여 실천해 나가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마련했다. 이 같은 南北合意가 착실히 실현되어 나간다면 올해는 「남북평화공존」의 元年으로 기록되고 멀고도 어려운 「통일장정」의 실질적인 出發點이 될 것이다.

남북사이에 이와같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페레스 트로이카에 의한 國際環境의 개방화, 남한에서의 민주화와 정부 교체에 따른 韓國政府의 적극적인 北韓政策, 이같은 주변정세의 변화와 내부사정의 악화에 따른 北韓의 政策變化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70년대초에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적십자회담」 및 「남북조절위원회」 등 남북간의 합의와 협의기구가 마련됐었음에도 실효를 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와 지금의 사정은 크게 달라 이번 合意의 실현가능성은 기대해 볼만 하지만 실제적인 성과는 앞으로의 진전상황을 지켜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1. 우리 社會의 統一論爭

6·29이후 우리 社會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증폭되고 민족주의적 각성이 고양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北韓政策·統一問題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왔다. 이러한 관심의 고조는 열띤 統一論議로 표현되었다. 그동안 우리 社會에서 일어난 통일논의는 다양하고도 복잡하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화해 보면 統一政策에 관한 논쟁, 北韓變化에 관한 평가 논쟁, 統一方式에 관한 논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論爭은 대부분 保守·急進·穩健의 형태로 나뉘어 전개돼 왔다.

첫째, 統一政策에 관한 논쟁은 제6공화국 정부가 기존의 통일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가장 초기의 논쟁이라 할 수 있다.

保守派는 당시(1988~89년) 주변정세가 과거의 冷戰時代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북한은 6·25를 도발한 그 체제가 과거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을 조금이라도 바꿔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북한이 자유화·개방화되고 對南革命戰略路線을 명백히 포기한 다음 남한과의 평화공존을 명시적으로 선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통일의 主體는 정부이며 급진파를 공산주의자로 보고 온건파를 위협시켰다. 그들은 통일논의나 통일노력을 「환상적 통일지상주의」라고 비판했다.

急進派는 북한과 전면적인 교류·협력을 벌여 통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통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執權勢力이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고의적으로 통일을 방해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통일의 주체는 民衆이며 통일문제는 민중주도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문익환·임수경의 방북을 당연시했다. 급진파는 정부와 보수파를 反統一勢力으로 보고 그들이 통일문제에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거부하여 정부의 對北窓口一元化政策에 반대하고 온건파를 개량주의·기회주의로 몰아부쳤다.

穩健派는 과거의 정책을 수정해서 북한과의 접촉과 교류를 증진시켜 남북이 공존·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통일에 대한 보수파의 時機尙早論에 반대하고 급진파의 주장을 경박한 統一至上主義라고 하여 거부했다. 온건파는 통일정책이나 북한정책은 변화하는 북한실정이나 주변정세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北韓變化의 평가에 대한 논쟁은 東歐의 급변과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에 일어났다. 모스크바를 떠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카가 西進하여 동구를 변화시키고 다시 東進하여 몽골을 변화시켰으나 끝내 萬里長城을 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논쟁은 절정에 달했다. 이때 우리 사회의 急進派들은 대체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保守派들은 소련과 동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북한이 중국처럼 페레스트로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기존 체제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북한의 신문·방송이 계속 남한을 비방·중상하고 있고, 평양정권이 인민을 여전히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대외정책이나 대내정책 모두가 과거 그대로라고 주

장,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을 바꿔서는 안된다고 강변했다. 보수파는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南北高位級會談으로 나타난 북의 태도변화까지도 일시적인 전술이라고 무시하면서 과거 7·4성명 이후 땅굴을 파기 시작한 사실을 강조하며 대북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穩健派는 북한은 이미 점진적이지만 변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인민군의 남녀장교들이 임진강을 건너 월남한 사실과 잇단 북한 유학생들의 귀순은 북한체제의 기강이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고 열거하면서 북한의 변화는 부분적인 것에서 시작되어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페레스트로이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지만 그 힘은 이미 북한의 내부에 파고들어가고 있고, 북한 인민이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의 발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적 동요에서 시작될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표면에 나타난 북한의 변화가 비록 작은 것이라 해도 북한은 최소한 그만큼은 변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북한과 같은 閉鎖社會의 경우 작은 변화라도 크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 온건파의 인식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이나 통일노력은 북한의 변화를 전제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견해였다.

셋째, 統一方式에 대한 논쟁은 獨逸統一이후의 충격속에서 대두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독일통일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둘러싼 適合性 問題에 대한 논쟁이다.

우리 사회의 多數派는 독일통일방식으로 한반도가 통일될 수는 없다고 믿고 있다. 그 논거는 독일과 한국의 사정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 懷疑論者들은 동·서독은 남북한처럼

전쟁을 치르지 않았고, 오히려 상호협력관계를 고도로 발전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동독의 자유화 수준은 북한의 자유화 수준보다 높고, 서독의 경제발전 수준은 남한의 경제발전 수준보다 높으며, 독일에서는 國家聯合이나 聯邦國家의 경험이 있으나 우리에게서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을 독일과 한반도의 차이점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少數派는 독일통일방식은 우리에게도 적합하며 한반도도 독일식으로 통일될 수 있고, 독일식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실제로 독일식 통일이 이룩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회의론자들이 지적하는 독일과 한반도의 차이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지언정 독일식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남한의 정책은 한반도가 독일식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韓國政府는 북한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과거의 통일정책에서 일보 진전된 적극책을 펴 왔다. 대체로 온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같은 정책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統一方式에 관해서는 獨逸式 統一은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2. 3段階 統一論

분단국가의 통일이 사전에 마련된 통일방안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분단상태에서 마련된 통일방안은 정치선전적 의미를 띠게 마련이고 통일의 환경이나 정세는 계속 변하고 있

기 때문에 실제의 통일성취 과정에서 기존 통일방안의 수정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가 있고 평화통일을 추구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일관되고 지속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의 제시가 바로 정부의 統一方案이다. 남북한 정부도 이미 각기의 통일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국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南北聯合段階를 거쳐 정치통합을 이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북연합」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것은 체제가 다른 두 主權國家의 연합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통일론은 國家聯合을 거쳐 單一國家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은 그 명칭에 나타난 바와 같이 聯邦國家 방식에 의한 통일을 지향해 왔다. 평양측이 통일 방식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은 것이 없어 그들이 주장하는 聯邦制가 실제로 어떤 모습을 갖춘 국가체제인지가 분명치 않다. 특히 그들은 영문으로 된 문건에서는 연방제를 국가연합을 의미하는 Confederation으로 표기하고 있어 그 성격이 더욱 모호하다. 그러나 그들이 단일주권을 갖는 국가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國家聯合보다는 聯邦國家를 통일이후의 정치체제로 구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南北分斷은 總體的 分斷이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것이 南과 北으로 분단돼 있다. 그러나 분단의 요소, 즉 무엇이 분단됐고 무엇을 통일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분단과 통일의 實體的 要素는 크게 보아 民族·國家·體制의 셋으로 집약할 수 있다. 따라서 人的 요소로서의 民族, 정치적 요소로서의 國家, 사회·

경제적 요소로서의 體制 등 세가지만 통일한다면 우리의 統一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노력은 이 세가지의 통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분단의 세 要素의 성격상 통합의 우선순위를 가려보면 人的 요소로서의 民族의 통일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은 國家統一· 體制統一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 즉, 民族이 먼저 통일되어 상호 교류와 왕래가 이뤄진 다음 國家를 통일하고 다음 단계로 體制를 통합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가 될 것이다. 따라서 統一의 단계는 民族統一· 國家統一· 體制統一의 3단계로 추진되어야 한다.

(1) 제 1 단계 國家聯合 : 民族統一段階

人的 요소로서의 民族의 통일은 國家聯合(Confederation) 형태로 달성될 수 있다. 국가연합이란 복수의 국가가 각기 主權을 갖는 國家體制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관계를 맺는 상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 政府와 평양 政府가 서로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條約을 체결하여 높은 수준의 國家間 協力體制를 갖추어야 한다. 사람들의 自由通行, 물자교류를 위한 自由通商, 우편·전신·소포 등의 自由通信 등 이른바 3通協定の 체결과 실행도 이 단계의 과제다. 이산가족문제도 이 단계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이 國家聯合단계가 되면 겨레는 統一狀態가 되지만 國家와 體制는 계속 分斷狀態로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는 「1민족, 2국가, 2체제」 상태가 된다.

(2) 제 2 단계 聯邦國家 : 國家統一段階

國家聯合 상태에서 남북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협력이 심화되면 남북이 각기 主權을 점차적·부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의 中央政府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정부는 강력한 권력을 갖는 中央集權的 政府가 아니라 軍事·外交·通貨 등 공통된 중요문제에 대해서만 제한된 권력을 갖는 聯邦政府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聯邦國家(Federation)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관계가 條約이 아닌 憲法으로 규정되고 남북 주민은 국가연합 단계와는 달리 같은 國籍을 갖는 같은 國民이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 이르면 民族과 國家는 통일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體制는 계속 분단 상태로 남아 있어 이 단계는 「1민족, 1국가, 2체제」 상태가 된다.

(3) 제 3 단계 單一國家 : 體制統一段階

聯邦國家가 되면 정치적 통일은 끝난다. 그러나 單一民族인 우리나라가 체제가 서로 다른 복수의 지방정부를 갖는 聯邦狀態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상이한 체제를 통합하고 聯邦國家를 중앙집권적인 單一國家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體制統一이다. 따라서 이 단계는 社會的 統合段階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단계에서는 法體系의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體制統合이 끝나면 분단의 세 요소, 즉 통일의 세 대상인 民族·國家·體制가 모두 통일되어 통일과업이 끝나고 우리는 單一國家가 된다. 따라서 이 단계는 「1민족, 1국가, 1체제」 상태가 된다.

이 3단계 통합방안은 北韓의 聯邦제도 수용하여 남북한의 統一方案을 조정·통합하는 방안이 되어 南北의 대화와 합의를 도출하는데 훨씬 유익한 장치가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聯邦制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北韓의 「고려연방제」도 그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高麗聯邦制는 북한에서 인민들 사이에 자유롭고 광범한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우리 4천만 남한 국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받아들여 질 수는 없다. 제 2단계 통일의 聯邦國家를 형성할 때 어떤 聯邦制를 채택할 것인가는 남북 당국의 협의와 남북 7천만 겨레의 동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과제다.

統一의 3段階

| 단계 항목 | 제 1 단계 | 제 2 단계 | 제 3 단계 |
|----------|---------------|---------------|--------------|
| 통일대상 | 民 族 | 國 家 | 體 制 |
| 통일체제 | 國家聯合 | 聯邦國家 | 單一國家 |
| 통일상태 | 1민족, 2국가, 2체제 | 1민족, 1국가, 2체제 | 1민족, 국가, 1체제 |

段階別 統一狀態

| 단계 대상 | 제1단계 | 제2단계 | 제3단계 |
|----------|------|------|------|
| 民 族 | ○ | ○ | ○ |
| 國 家 | × | ○ | ○ |
| 體 制 | × | × | ○ |

盧泰愚 대통령은 1991년 9월 25일 UN 방문을 마치고 뉴욕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통일문제에 대해 언급하여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 우리측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가 이뤄지고 난 후 연방제를 거쳐 정치적 통합의 단계를 거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聯邦制를 수용하여 국가연합과 연방 국가 단계를 차례로 거쳐 통일국가로 간다는 것으로서, 남북통일 방안의 조정·타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노력이 서울과 평양의 쌍방에 의해서 이룩될 때만 南北統一方案의 조정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합의서 채택은 우리의 7·4공동성명과 독일의 동서독 기본협정의 중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일의 3단계중 제1단계인 國家聯合단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된다. 독일은 동서독이 고도의 협력관계에 도달했으나 국가연합체제로 제도화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통일되어 연방국가가 되어 있다.

3. 獨逸式이나, 예멘式이나

2차대전 이후 세계는 단일국가가 분단되었다가 再統一된 세계의 모형을 경험했다. 이 세가지의 통일 성취과정은 서로 다르고 특색이 있어 각각 독자적인 統一方式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베트남式 統一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의한 이념적인 분단국가가 武力統一方式에 의해 공산화한 통일모형이다. 여기서 통일의 주체는 北베트남의 공산정부이고 北部 공산체제에 의한 南部 자본주의체제의 일방적 강제적 병합형태를 취했다.

둘째는 獨逸式 統一이다. 이것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공산주의에 의한 이념적 분단이었지만 武力이 아닌 平和的方式에 의해 자본주의화한 통일모형이다. 통일의 주체는 공산주의측 인민대중이고, 그들이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동독의 지배체

체를 거부하고 서독으로 集團歸依한 형태로 통일이 이뤄졌다. 그 결과 우월한 西歐 자본주의체제가 열등한 東歐 공산주의체제를 일방적·평화적으로 병합하는 형태로 통일이 완성됐다.

셋째는 예멘式 統一이다. 예멘은 터키(북부)와 영국(남부)으로부터의 해방과정에서 각각 별개의 독립국이 됐다. 北예멘은 전통적·봉건적 독재체제, 南예멘은 사회주의적 독재체제를 이루어 대결해 오다가 쌍방이 각각 몇 차례의 정변을 겪는 동안 回敎主義에 입각한 民族主義 통일세력이 집권하면서 협상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 예멘식 통일은 양측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식적인 협상과 조정에 의해 이루어진 水平的 統合 모형이다.

베트남式과 獨逸式은 하나의 우월한 세력에 의한 일방적 통일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빨랐고, 통합된 體制의 모습도 통합한 측의 모형을 따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다. 그러나 예멘式은 대등한 세력이 회담을 거듭하면서 통합작업을 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합된 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는 끝까지 보아야만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상 3개의 統一模型 가운데 우리는 어느 것을 취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독자적인 모형을 새로이 개발할 것인가가 지금의 과제다.

북한이 가장 선호할 방식은 베트남式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실현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공산체제의 소멸을 전제로 하는 獨逸式이다. 따라서 북한은 次善策으로 예멘式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정부는 獨逸式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실현이 어렵다

고 보고 예멘式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현재 통일
 예의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남과 북이 일치되고 있다. 지금 남북
 간의 대화와 합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도 그같은 방법상의 일치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예멘式으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통
 일을 이루어내기는 어렵다. 남·북 예멘이 체제상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인 구조에 차이가 없고 강력한
 回敎主義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통
 합이 가능하다. 우리의 경우 상반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단되어
 반세기를 겪어 오면서 너무나 異質化되어 있기 때문에 예멘式으
 로 궁극적 통일까지 이루어낼 수는 없다. 우리의 내외사정이나
 국민적 욕구가 그것을 수용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의 統一方式은 獨逸式이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가
 능하다고 생각한다. 남북간의 체제경쟁에서 인민의 자유와 물질
 적 풍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다 안정되게 보장해 주는
 것이 남한의 자본주의·의회민주주의체제이기 때문에 남한의 우
 월성에 의해 북한을 흡수하는 독일식 통일이 현재의 북한동포를
 위해서나 미래의 전체 민족을 위해서는 유익하다.

따라서 우리는 獨逸式 統一을 목표로 정하고 이 목적에 맞도
 록 북한정책·통일정책을 세워서 펴나가야 한다. 다만 현재로는
 북한에서의 여건미숙으로 독일식 통일이 어렵기 때문에 평양의
 집권세력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에 의해 분단문제를 해결하는
 예멘式 方式을 취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적 방법이 될 수는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 통일(목표)은 獨逸式, 그런 통일에 이르는 점
 진적인 방법(수단)은 예멘式이 타당하다. 그러나 궁극적인 통일
 에 이르는 중간적 접근방식으로서의 예멘式은 어디까지나 獨逸

式 統一을 가능케하는 방향과 범위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대화와 협상에 의한 통일노력의 外形은 예멘式을 취하되 실질적인 내용은 獨逸式 統一을 가능케 하도록 짜여져야 한다.

4. 現段階의 政策目標

독일식 통일이 가장 적절하고 실현성있는 통일방식임에도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대내적으로 엄격한 全體主義的 獨裁體制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배타적인 孤立主義的 閉鎖體制로 일관하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北韓政策·統一政策의 목표는 북한의 獨裁體制·閉鎖體制를 완화시켜 自由化·開放化하도록 유도하는데 두어야 한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부문제인 自由化보다는 대외사항인 開放化다. 북한과 같이 정체되고 엄격한 폐쇄사회가 일단 개방되면 변화가 가속화되고 그 변화는 각 분야로 파급되어 多元化·自由化를 거쳐 民主化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북한에서의 독일식 통일의 환경, 즉 통일직전의 동독과 같은 사회상태의 조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북한을 개방하여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사이의 인적·물적 교류와 접촉이 많을수록 좋다. 따라서 교류와 접촉의 기회를 늘리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남북의 접촉과 교류를 저해하는 우리의 제도나 정책은 舍目的的으로 수정 내지 폐지해야 한다. 지금의 국가보안법이나 북한접촉의 許可제도 신축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을 개방화·자유화하는데 저해된다면 결국은 통일까지도 지연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인적접촉·물적교류가 많을수록 통일에 유익하다면 이것을 極大化·最大化해야 한다. 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 남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허용하고 북이 원하는 물자, 남에 필요한 북한물자의 이동은 가능한 한 모두 허용돼야 한다. 설사 우리 사회의 좌파인사나 운동권학생이라도 원하는 사람은 모두 북한방문을 허용해야 한다. 文益煥·林秀卿과 최근의 운동권학생 2명의 북한방문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그들의 訪北이 북한을 내부적·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일은 없는지 등을 냉철하게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한다.

남북간의 접촉과 교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獨逸式 統一의 성취에 유리하다면 남북관계의 全面開放化와 全面自由化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1989년 平壤祝典에의 남한대학생 불참과 1990년의 관문점 범민족대회 유산도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일 평양측의 요구나 우리 학생들의 주장대로 平祝에 우리 대학생 5만명이 참가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 자유발랄한 태도와 물질적으로 여유있어 보이는 모습을 지닌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는 북한인들의 認識, 남한의 좌파운동권 학생들이 가난하고 부자유한 主體思想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낀 北韓觀은 각기 그들의 가치관과 인식체계에 충격과 혼란을 야기시켰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오해와 환상에서 일깨워 보다 현실적·과학적 사고를 하게 했을 것이다. 만약 북한당국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우리 대학생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그 수를 크게 줄여 선별적으로 방북을 허용했다면 그것은 결국 선전면에서나 전술면에서 북의 패배가 됐을 것이다. 범민족대회의 유산도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실패를 가져 온 것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적 근거위에 세워진 정부의 북한접촉 許可制에 기인한다. 지금 정부가 북한과의 접촉과 교류를 「창구일원화」에 의해 통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것은 정부가 우리 민간인 북한접촉 내지 물자교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접촉과 교류가 많을수록 좋다면 지금의 許可制를 완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신고접수를 통해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있기에 해도 북과의 접촉·교류에서 발생하는 위법사항·국익저해사항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獨逸式 統一을 가능케 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는 우선 남북간의 通行·通商·通信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三通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선택이며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과제다. 인적교류인 自由通行·물적교류인 自由通商·정신적(문화적)교류인 自由通信만 이루어지면 이같은 開放이 북한을 自由化시켜 통일 직전의 東獨의 상황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三通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웬만한 것은 양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3通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北韓體制는 東獨처럼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중요한 것을 양보한다 해도 그 양보의 효과가 생기기 이전에 통일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5. 早期統一이나, 漸進統一이나

통일은 서둘러서 이루어질 문제도 아니고 성급히 통일이 이뤄질 때 그 부작용은 커지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통일은 신중하고 확실하게 추진돼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는 조기통일에 대한 북한의 거부반응과 통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사회적 부작용을 두려워하여 점진통일론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게 일고 있다.

漸進統一論은 독일이 정치적 통일을 성취한 다음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대두됐다. 점진통일론자들은 獨逸統一이 경제·사회적으로 부담이 크고, 독일식 통일이 이뤄졌을 때 경제력에서 西獨보다 약한 우리가 이를 감당해 낼 수 없으며, 그같은 부담은 早期統一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獨逸統一이 지금 아주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悲觀論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속단이며, 통일의 지연은 분단의 永久化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우선 獨逸統一을 올바르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 지금 독일통일은 순조롭게 잘 진행돼 나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統一費用이 막대하다고 하나 직접비용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북한을 접수한다고 할 때 꼭 독일과 같이 큰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재고돼야 한다. 統一이후의 統合過程은 우리 현실에 맞는 節約型으로 짜아 나가면 된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서둔다고 해도 早期統一이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조기통일을 추구한다 해도 결과는 점진통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미리부터 점진통일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만약 통일을 지연시킨다면 통일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한의 外資導入이 순조롭고 中國式 開放政策이 성공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이룩한다면 통일의 기회는 멀어

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資本主義體制가 때때로 겪어 온 경제공황이라도 맞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우리에게 유리한 남북간의 力關係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점진론자들은 통일을 이루기 전에 북의 빈곤상태가 해결되도록 經濟再建을 돕는 것이 통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방식이 성공하여 북의 경제력이 강화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통일을 가져올 것인가,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통일이 늦어지면 일본의 상업정책에 기선을 빼앗겨 북한이 일본의 경제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政治的 統一은 서둘러서 早期統一을 추구하고 정치통일 이후에 있을 社會的 統合은 漸進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結 論

남북한 정부는 다같이 獨逸式 統一의 어려움과 비현실성을 전제로 예멘式 접근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國家機構 주도하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漸進政策으로 나가고 있다. 남북한은 모두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남북관계가 원만히 개선되어야만 지금의 경제적·사회적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 국제정세도 남북의 평화관계 수립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대화는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호전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예멘式을 계속 추구한다면 남북관계는 개선되겠지만 궁극적인 통일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유리하게 성숙된 지금의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당기려면 獨逸式 統一을 목표로 하고 그 접근방식만을 예멘式으로 해야 한다. 예멘式 방식에 의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다 보면 三通이 이뤄지고, 三通이 이뤄지면 북한에서 독일식 통일의 환경이 조성되어 결국은 獨逸式으로 통일이 이뤄질 것이다. 이것은 곧 자유와 풍요와 희망을 보장하는데 실패한 열등한 북한의 共產主義的 全體主義가 그것들을 보장하는데 우월한 체제로 입증된 남한의 資本主義的 民主主義로 흡수되는 통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의 과제는 예멘式 방식을 통한 獨逸式 統一을 추구하는 한편, 독일식 통일에 대비하여 동독인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인민들이 주저없이 南韓을 선택할 수 있도록 經濟力의 비축, 自由의 증폭, 福祉의 향상에 전념해야 한다.

第3會議 討論

정진위 교수(사 회) :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표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생각과 비슷하고 또 강조한다는 뜻에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토론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우선 한반도 통일의 단계, 방법,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위원님께서도 남북기본합의서가 기초단계라는 뜻있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독일식 통일로 이러한 통일이 이룩될 때까지 방법상 하나의 과정으로 예멘식 통일방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통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점은 상당히 뜻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인식시켜 어느 시점에 준비가 되었을 때 동독이 자연적으로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을 원하였던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흔히들 너무 통일을 서두르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기회를 놓쳐서는 영구분단 가능성의 우려도 있으므로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포착해서 최소한 정치적인 통일은 이룩하도록 현 시점에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보이고 경제적인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독일식 통일이 우리 한반

도에서도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의 순서대로 김국진 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김국진 교수(지명토론) :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종서 논설위원께서 쓰신 논문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드립니다. 또한 구논설위원께서 생각하시는 여러가지 통일문제 특히 독일식 통일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몇가지 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방식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체제의 성격에 대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문제나 교류·협력은 남북한 양자간의 관계로서 우리측의 일방적인 의도만 가지고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성격과 북한체제의 수용능력의 한계와 제약성 등을 살펴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교류·협력이나 3통을 추진하여 북한주민의 민주적인 의식을 고양시키고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독일식으로 통일하는 것은 좋지만, 김일성에 의해 40년이상 통치되고 있는 북한체제의 성격에 대해서 분석해야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통일, 국가통일, 체제통일 등 삼단계 통일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혼동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은 인적인 요소로서 남북연합이 실현되면 민족통일이 된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 저는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분석적인 도구의 틀로써, 현재 논의되고

있는 3단계 통일론은 하나의 통일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있어서 체제, 국가, 민족순으로 상정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위원회에서는 민족통일이라는 개념을 민족통합과 민족통일로 구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별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가령 민족통합이라는 문제를 예를 들자면, 지금도 독일의 경우 민족통합이 진행되고 있고 베트남의 경우는 통일후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남북베트남간에 민족통합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체제통합을 통해서 민족의 동질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민족통합이 어떤 면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민족, 국가, 체제로 설정하는 것은 모호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구위원회에서는 민족은 인적인 요소이고 국가는 정치적인 요소이며 체제는 사회적인 요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류·협력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의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합의서의 채택은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통일의 과정에 관하여 서로간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소위 기능적인 통합 즉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사회의 변화를 주장했고 북쪽에서는 불가침협정 등 정치적 일괄타결주의를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남북간에 합의된 교류·협력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성취하는데 하나의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부연하여 제가 커멘트를 겸해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류·협력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혹자들은 그냥 내

버려두자 하는 얘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북한사회를 개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사회의 개방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남북관계의 기본전제에는 형제애나 동포애 등 북한주민에 대한 복지향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북한사회의 개방을 통해서 북한사회를 현대화시킴으로써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의 동원체제 또는 김일성 주체사상 등 유일체제를 바꿔놓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북한주민들의 민주의식을 고취시켜 북한체제에 대해서 적어도 북한주민들이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 민주화가 완전히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신문 등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는 2천만 북한주민의 의견이 통제된 상태에서 김일성 1인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통일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멘식 협상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지지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화해·협력 시대 다음 단계로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것은 남북연합시대인 것 같습니다. 화해·협력시대에 이어 남북연합시대 그리고 그다음 협상의 단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간에 동독국민들이 서독을 선택한 그런 상황까지는 안되더라도 북한주민들이 최소한 북한체제를 비판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통일정책이 추진되어야 협상을 통해서 평화공존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사회의 800명 정도 되는 엘리트 집단들이 자기들의

이해(stake)를 양보하면서까지 협상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의문점은 북한이 남북한간 교류·협력, 일본과의 수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자신의 체제를 공고하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통일보다는 오히려 대남사회주의 혁명노선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인식하에서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구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의문을 갖고 있는 문제인데, 협상이나 대남평화전술 그리고 교류·협력 등을 통해서 경제개발을 해서 북한이 위기를 모면하고 지금의 유일체제와 같은 그런 정치체제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외부변화, 내부변화, 남북한간 변화에서 오는 혼란 때문에 체제수호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체제가 교류·협력을 하면서 체제를 강화해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화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침투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사회과학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명제라고 한다면 교류·협력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계를 몇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한다면 이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하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하는데, 2단계의 정책목표는 북한사회의 개혁을 유도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민주화, 인권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이 북한체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추진목표에 관한 단계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긴장완화라고 한다면 북한이 교류와 협력에 합의했지만 사상면에서 전혀 개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북한체제의 수용능력의 한계때문에 북한주민들이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을 개방시키고 현대화 추진이라는 트랙에 같이 몰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적인 가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의하지만 교류·협력을 논함에 있어서는 북한체제에 대한 성격규정이라든지 제한성, 한계성이 언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을 추진하는 속도와 관련하여 완급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하나의 실체로서 북한을 여태까지 40년동안 통치해 온 북한체제가 있고 국내에도 여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급을 조절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독일통일 이후에 제기되고 있는 통일비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통일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통일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북한주민의 비판적 의견이 수렴되어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동포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 회 :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강대학교 이태욱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태욱 교수(지명토론) : 구위원님께서 통일방식을 논하면서

북한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꼭 통일이라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내세워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추진해야만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40여년간 아무런 교류없이 지내 오다가 최근에 와서 경제, 예술, 문화, 종교 등 각 방면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교류도 극히 통제되고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기본합의서가 발효되어 앞으로 진전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꼭 통일이라는 목표를 세워놓지 않더라도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이라는 명시적인 목표를 우리가 반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만 살표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 양측은 틀림없이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북간에 발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교육구조, 산업구조, 자원요소들간의 구조 등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북간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연구논문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또 누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입니다. 지하자원의 경우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지하자원중 17억불에 해당하는 양을 북한에서 들여올 수 있다는 연구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경공업제품 특히 소비제품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본과 기술이 있고, 북한은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규모의 경제라는 이득이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류·협력은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류·협력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추진되어야만 하는데, 정치적인 요인이 하나의 장애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한은 경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 온 반면, 북한은 현 체제의 유지라는 목표 때문에 경제적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이번 기본합의서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실천기구의 조직문제와 실천과정에서의 북한의 호응 정도에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핵사찰 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정부는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경제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장기적으로 핵문제를 하나의 협상카드로 내세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교류·협력에 응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너무 지체하면 그동안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어 그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핵과 관련하여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만 제외하고는 우리가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을 정경분리원칙하에 추진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보와 직결될 때는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정경분리원칙안에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

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제일 꺼려하는 독일식 통일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내세워 북한을 자극한다면 북한이 경제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응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할 때 북한의 입장도 항상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류나 협력은 한쪽이 아무리 추진하고자 하여도 상대방이 응하여 오지 않으면 달성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류·협력을 추진하다 보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개방되어 변화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국진 교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을 유도하려면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 특히 북한의 내정문제라든지 북한체제와 관련된 언급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교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지원한다고 하면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가능성도 있고 또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을 많이 왕래하면서 경쟁적으로 투자하려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우리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 수출 경쟁력 약화 등 경제적 어려움을 북한에 대한 투자를 통해 극복하려고 개별적으로 단기적인 이익 추구의 차원에서 북한과 접촉하다 보면 북한에 중복투자나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서 전체적인 이익면에서는 마이너스

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창구를 일원화하려는 정책은 이런 점에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앞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나가는 동시에 북한과의 경험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시책을 세워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면 북한내부 변화와 함께 정치적인 통일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위원 글을 읽으면서 조기 통일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빨리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히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통일이 더 멀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김국진 교수도 지적했듯이 북한의 경제력이 커지면 오히려 더 통일이 멀어질 수도 있다는 구위원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한가지 말씀드리면 경제력이 커진다고 하여도 사회주의체제로는 커질 수 없다는 것이 역사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체제개혁이 없이는 북한의 경제력이 현대화되고 규모가 커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독일식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만 그 점을 반복하여 내세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독일식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바이고 경제력을 키우고 북한과 교류·협력을 해 나가면 자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 회 : 독일식 통일논의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분야에 많은 연구와 발표를 한 민족통일연구원의 윤덕희 박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윤덕희 박사(지명토론) : 구위원님의 논문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셨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속도로 통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점을 달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단계 통일논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도 남북연합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단일국가를 상정하고 있고 북한의 연방제를 수용한다는 뜻에서 얼마전에 연방 단계가 삽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우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이 각 단계를 민족통일, 국가통일 그리고 제도통일이라고 규정하신 데에는 어느 정도 개념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이 독일의 경우에는 상당부분 맞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궁극적인 통일, 즉 궁극적인 국가통일은 단일국가통일을 의미합니다. 국가통일은 정치공동체까지 수립하는 것이고 이것은 연방제가 아닌 단일국가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위원님께서 연방단계를 국가통일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좀 혼동을 일으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하면 궁극적인 통일실현은 단일국가이고 그 기반조성으로서 남북연합단계와 연방제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구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족통일, 제도통일, 체제통일이 어느 정도 단일국가 이전 단계인 남북연합단계와 연방단계에서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통일까지 포괄하는 민족공동체 형성은 국가통일의 여건조성을 위해서 비정치적인 분야인 사회·문화·경제분

야에서의 공동체 또는 사회·문화·경제적인 통합을 미리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점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북연합, 연방단계에서 교류·협력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군사적인 협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류·협력을 통해서 민족간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남북간의 민족적인 동질성을 회복하여 마지막 단계에 있을 국가통일, 정치통일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통일방식을 논함에 있어 주관적인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합의서도 채택되었고 앞으로 북한사회에 관한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규범적이고 당위에 의한 처방보다는 북한의 객관적인 상황전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그러한 분석에 바탕을 둔 실현가능한 통일방식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독일식 통일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통일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사회·경제적 발전단계가 내부적인 변화 또는 외부적인 개방에 의해서 산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야 하고 산업화에 의하여 북한권력의 의지와는 별도로 주민들 의식에 상당한 자유화를 촉진시키고 따라서 북한주민이 남한의 자본주의에 기반한 의회민주주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열망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통일방식을 처방하기 이전에 북한의 현상황, 앞으로의 변화가능성 등을 좀더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논문 초반부에서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국내적인 논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북한의 변화가능성 인정 여부에

따라 보수파와 온건파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과거 북한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부족할 때 적용되었던 이야기지만 이제는 통일을 논하는데 있어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구분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구위원님께서서는 북한에 대한 외부의 지원이나 남북간의 경제적인 협력 등이 오히려 통일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소련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협력 또는 서구의 경제적인 지원이 북한경제의 안정과 성공으로 귀결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사회주의국가가 외부의 경제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더러, 그 과정속에서 외부와 많은 접촉을 하게되어 외부의 압력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의 정보 또는 새로운 가치들과 접촉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사회 곳곳에서 북한 권력이 예측하지 않았던 의식구조와 생활면에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자유화가 서서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경제지원은 북한의 경제적 안정보다는 오히려 사회내부의 변화를 먼저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조기통일이나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의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구위원님께서도 독일식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3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통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수준에서의 남북간의 경제협력 특히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타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상호간에 어떤 신뢰가 구축되어야만 완전한 민족구성원간의 인적교류를 비롯한 3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도 모든 면에서의 교류·협력이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체결된 합의서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북한은 정치·군사 문제의 우선 해결을 고집해 왔는데, 이번 합의서를 통해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강조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북한사회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북한의 실천의지와 여러가지 실천조치들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남북한간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교류·협력이 많이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교류·협력은 남북한간의 여러가지 입장차이로 인해 상당히 대립되어 왔기 때문에 합의서 채택 이후에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과제는 분과위원회 산하 부문별 공동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교류·협력에 관한 일반협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법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입장차이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와 민간교류주체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서 교류·협력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추진방향에 관하여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북한은 합의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교류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교류·협력, 특히 출판 보도에서의 교류·협력,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인적교류 내지는 직접적인 교류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될 과제는 되도록이면 실현가능한 분야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교류·협력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주로 비정치적인 분야, 또는 교류·협력이 많이 축적된 분야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자유왕래라든지 언론, 출판과 같이 사회개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점차적으로 수준과 범위를 조절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겠고 국내적으로도 우리 창구일원화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국내법적인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합의서 이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 :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종서 논설위원 : 토론해 주신 세분 선생님들께 사의를 표합니다. 주제가 교류·협력과 거리가 있다는 점과 민족, 국가, 체제의 3단계 통일개념이 모호하고 혼돈을 준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개념규정에 있어서 민족이나 국가나 체제중 하나가 통일되면 사실 다 통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순서를 나누어 남북한간 통일방안을 조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인적요소, 정치적 요소, 사회·경제적 요소 등으로 제나름대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먼저 김국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기본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설

명해 주셔서 부족한 저의 논문이 보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제가 설명을 더한다면 북한체제는 엄격하기 때문에 남북한간 기본합의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북한과 함께 토의까지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3통까지만 대화를 하고 3통이후부터는 예멘식 단계도 끝나고 독일식 통일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전제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토의를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동감입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그 체제가 북한을 완벽하게 통제한다 해도 일단 3통이 성사되어 변화가 시작되면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그 범위는 굉장히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또 체제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독일의 사례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이 통일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페로스트로이카에 따른 변화가 모스크바를 떠나 동구를 휘저을 때 견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독일통일의 주체가 누구냐고 할 때 저는 동독 인민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야 할 점은 동독정권과 서독정권이 협의해서 통일한 것도 아니고 서독정부에 의해 달성된 것도 아닌 동독인민이 선택했고 다만 절차상으로 서독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두분 교수님께서도 이 점을 잘 지적해 주셨고 또한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교류·협력의 경제적인 측면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기통일이나 독일식 통일을 걸어로 표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당국자나 신문에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일에 역행되고 방해하는 것 밖에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태욱 교수님과 윤덕희 박사님께서 경제가 커지면 거

기서 부터 상당히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이 자본주의는 필요한데 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택한 것이 남한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즉 국가의 힘은 강력하게 하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들여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자본주의와 유사한데 자본주의 요소를 한꺼번에 들여오면 안되니까 변방이나 해안가에다 특정지구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면을 차단시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시행하는데 제법 잘 되고 있어서 몇 개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술자가 늘고 공부하러 학생들을 보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적교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적교류를 통해 관광객까지 들어가고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태욱 교수께서는 사회주의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이 어디까지 발전해 갈지 현재까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반체제 그룹들의 불만이 언제 또 다시 천안문에서 터질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일 북한이 중국식으로 성공해서 우리보다 우월해진다고 하면 그때는 통일이 난감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덕희 박사님께서도 좋은 지적과 함께 제 논문에 대하여 보완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까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보수·진보로 나눠서 평가하는 것은 좀 낙후된 사고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어느 분이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고 대남적화전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은 변한 만큼 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북한은 선전으로 유지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하고 실제로 하는 것이 다르므로 말 그대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김일성의 어록만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로 생각하면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회현상의 변화와는 별개로 정책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덕희 박사님 의견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에 그런 사고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고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김일성을 전범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런 상대와 대화나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거문제는 다음으로 미루면 됩니다. 총선전에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상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북한이 변화했으니까 남북간에 합의가 된 것이고 이 점을 인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진보와 보수 등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복지문제를 생각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북한주민들이 굶어 죽게 되면 지원해야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통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통일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복지까지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복지를 생각해서 우리의 정책을 거기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정치체제가 존재하니까 먹

여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부족하다면 우리가 도와주면 될 것입니다. 통일정책도 이 목적에 맞게 합목적으로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사 회 :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방청석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논평과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옥수 교수(인천교육대학) : 저의 전공은 교육학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하신 분과 토론에 참석하신 분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표자께서는 통행·통상·통신 등 3통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 중에 북한 것을 이쪽에 방영한다든지 또는 방청할 수 있도록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선생님이 느끼시는 대로 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통일방법 문제인데 발표하신 분은 독일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시기를 정해놓지 말고 통일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통일은 달성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분 토론자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종서 논설위원 : 북한의 통신개방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개방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저쪽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안옥수 교수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적십자회담과 관련하여 북측이 「꽃과는 처녀」의 공연을 요구한 문제에 대하여 통일원에서 저의 의견을 물

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시간짜리 분량으로 우리 국민들이 30분 정도 보게 되면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므로 두려워 할 것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미 북한에 대한 교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점에 가면 북한출판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습니다. 독자들의 구미나 의식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읽는다 해도 우리 정부가 두려워 하고 북한이 기대하는 그런 효과는 전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통일원측에 만일 겁이 나면 사전에 우리가 방영해 테스트해 보자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방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아마 전술적으로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통신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다른 전술을 씁니다. 사정을 안다면 우리가 이점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까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통신개방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는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쪽을 더 많이 개방시키기 위해서 카드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 회 : 한마디 말씀하시겠습니까?

김국진 교수 : 아까 독일식 통일방식이라고 했는데 저는 북한 김일성 체제가 1948년 9월 9일 수립되어 지금까지 지탱해 온 주체이데올로기로는 이천이백만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주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 자유, 평화, 복지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체제하에서 이

천이백만 동포가 겪고 있는 상태를 놓고 볼 때 협상을 해서 통일을 한다는 식의 발상은 정치학자의 한사람으로서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욱 교수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경제 체제를 비교할 때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간에 어떤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체제도 현재로서는 건전한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국가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많이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원칙적으로는 사적소유권을 인정한 시장경제체제로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야 하지 지금 북에서 하고 있는 스타일로 체제가 통일된다면 우리도 같이 망합니다. 따라서 이런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북한과 단일정치적인 체제로 통일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주민들이 시장경제를 수용해서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소련과 동구권의 경우에서 보듯이 북한주민들은 시장경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구가 처한 혼란상태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통일비용이라고 한다면 통일비용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비용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간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따져볼 때 당장 통일하다 보면 같이 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윤덕희 박사 :저도 기본적으로 독일식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실현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쌍방간에 대화라든지 교류·협력도 중요하겠지만 각자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남한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민주화를 더욱 더 완성시키고 경제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북한에서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통해서 국민 스스로가 어느 단계에 가서는 남한식의 민주적인 자본주의에 의한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 고맙습니다. 방청석 질문이나 커멘트를 받겠습니다.

최 현 연구조정실장(한국청소년연구원) : 체육청소년부와 저희 연구원이 금년에 4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실현가능성은 협의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독립도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졌고 독일 통일도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한국통일도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를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독일식 통일을 하자는 것, 기회포착을 하자는 것, 3단계 통일을 하자는 것, 마지막으로 남한이 경제력 향상, 자유증진, 복지향상 등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독일식 통일이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이것이 희망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칫 서두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생각하다 보면 북한은 고정된 체제이고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의 체제는 유동적인 체제이므로 북에서 볼 때는 우리가 먼저 붕괴되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통일후의 사회문제를 보면 독일의 경우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3개월만에 청소년 범죄가 10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동독국민들 80% 이상이 자신들을 2등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권도 2등 국민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 민족의 동질성이나 또는 민족공동체 의식이 남북간에 사회적인 문제없이 순조롭게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짧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호(민주광장 발행인) : 고르바초프가 권좌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책에 관하여 미국의 학계에서는 주로 3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째, 브레제넨스키와 같이 경쟁을 하자는 주장과 둘째, 엘리슨같이 소련의 개혁을 도와주지도 말고 방해하지도 말고 개입하지 말자는 하버드 학파 세번째, 개입을 해서 적극 고르바초프를 도와줘야 된다는 핀스톤 학파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는 주로 하버드 계통의 도와주지도 말고 방해하지도 말고 내버려두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가 개혁의 선두였지만 고르바초프가 몰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엘핀이 들어선 후 식량폭동이 생겨나자 미국은 최근에는 식료품을 공수해서 살려야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북한을 경쟁자로 생각해야 할 것이냐 또는 북한에 대해

서 개입도 하지 말고 도와주지도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서 도와줘야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런 세가지의 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을 채택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 회 : 고맙습니다. 아주 짧은 질문이 있으면 하나 더 받겠습니다.

김경태 교수(통일연수원) : 교류·협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기능주의적 접근만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오히려 교류·협력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연역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통일접근 방법으로서 3단계 논의를 제시하셨는데 통일개념상의 논리적 합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그 방안이 앞으로 통일방도에 대하여 북한측과 정부간에 협상하는 꽤 유용한 카드가 될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방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연합단계까지만 간다면 그다음 문제는 우리 민족의 역량이나 순발력으로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통일방도를 위한 남북간의 정치적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서는 유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종서 논설위원 :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최 현실장께서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셨는데 남북간에는 교류와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불변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독일식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

에 청소년들간의 교류는 꼭 되어야 하고 횡수는 많을수록 좋고 규모가 클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독일식 통일이 말로만 끝나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당국과 대화는 하되 통일을 대화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과 통일할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통일은 북한의 백성들하고 남한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3통만 되면 그때는 김일성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북한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변하고 범위가 변해서 통일이전의 동독상태까지 물고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총집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접촉과 교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독일통일후에 범죄가 많고 국민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점에 연연해서는 통일은 요원합니다. 통일이후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통일이후의 내부분제인데 그런 점을 걱정해서 통일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점진적인 정책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기통일을 위해서 걸음으로 점진적인 것을 내놓는 것도 좋습니다. 독일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비관적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독일통일은 참 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독일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일이전으로의 원상 회복 문제를 놓고 투표를 실시한다면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의 통일열망이 더 강하므로 우리가 독일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도 덜 들이고 절약형으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양호 선생님께서는 시사성있는 미국정책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한을 경쟁대상으로 할 것이냐 원조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이태욱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북한과 교류는 합리적인 경제원칙 자체에 유익하니까 그런 점에서도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외국하고 무역하는데 북한과 무역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통상은 우리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쟁취해야 할 현재의 대북한정책 목표인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북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독일식 통일을 가져오는 중요한 첩경의 하나이기 때문에 북한과 경쟁할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가 평양이 진짜 천국이 아니라는 점을 빨리 깨닫고 국민적인 의지, 민주적인 각성,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북한체제를 거부하고 남한의 체제를 선택하는데 경제적인 교류가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의도하에서 경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 회 : 감사합니다. 사회석에 앉았으니까 한두마디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시의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좋은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를 착실히 할 때 통일이 앞당겨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독일식으로 통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독일통일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잘 되었다거나 또는 단순한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번영, 복지를 겸한 경제성장을 해 왔고 서독이 주축이 된 교류·

협력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북한이 변화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많습니
다만 분명히 어느 정도는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변화는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둔 변
화이며 또 어느 시점에 북한이 갑작스럽게 변화할 때 우리는 그
것을 수용하고 대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아울러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가 여기에서 합의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즉 남북교류와 협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역경에서도 계속해
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은 것 같습니다. 발표하신
분, 토론해 주신 분 또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
사드립니다.

빈 면

〈附錄〉會議概要

第3回 國內學術會議

—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日 時：1992年 2月 27日(木) 09：30—18：00

場 所：신라호텔 영빈관

09：30—09：50 登 錄

09：50—10：00 開會辭：李秉龍(民族統一研究院 院長)

10：00—12：00 第1會議：「基本合意書」의 法的 性格과 政治
的 意義

- 司 會：金 惠(外國語大 教授)
- 發 表：丁 世 鉉(民族統一研究院 副院長)
- 討 論：柳 世 熙(漢陽大 教授)
全 寅 永(서울大 教授)
崔 大 權(서울大 教授)

12：00—13：40 午 餐

13：40—15：40 第2會議：南北間의 不可侵과 信賴構築의 展望

- 司 會：鄭 鍾 旭(서울大 教授)
- 發 表：吳 寬 治(國防研究院 研究委員)
- 討 論：金 明 基(明知大 教授)
河 英 善(서울大 教授)
朴 英 鎬(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15：40—16：00 Coffee Break

16：00—18：00 第3會議：南北交流・協力の展望과 課題

- 司會：鄭 鎮 渭(延世大 教授)
- 發表：具 宗 書(中央日報 論說委員)
- 討論：金 國 振(外交安保研究院 研究室長)
李 泰 旭(西江大 教授)
尹 德 熙(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